

HEADQUARTERS
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
사령부
UNIT #15259
부대번호 15259
APO AP 96205-0032
군우 96205-0032

HEADQUARTERS
한미연합군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사령부
UNIT # 15255
부대번호 15255
APO AP 96205-0028
군우 96205-0028

HEADQUARTERS
주한미군
UNITES STATES FORCES, KOREA
사령부
UNIT # 15237
부대번호 15237
APO AP 96205-0010
군우 96205-0010

UNC/CFC/USFK Reg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No. 95-3
번호 95-3

1 January 2006
일자

Aviation
항공

KOREA TACTICAL ZONE (RK) P-518
(RK) P-518 한국전술지대
FLIGHT PROCEDURES
비행절차

유엔사
사령부
부대번호 15259
군우 96205-0032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대번호 15255
군우 96205-0028

주한미군
사령부
부대번호 15237
군우 96205-0010

유엔군/연합사/주한미군 규정
번호 95-3

항공
(RK)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

보완. 유엔사/한미연합사령관(참조 : 연합사 항공처, 부대번호 15255, 군우 96205-0028)의 사전 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가 본 규정의 보완사항을 발행할 수 없음.

내부통제조항. 본 규정은 관리통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본 규정은 1995년 10월 19일자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과 1997년 2월 24일자 임시수정문 1호 및 1997년 9월 22일자 임시수정문 2호를 대체함.

제 1 장 개 요

| | |
|-----------------------|---|
| 1-1. 목 적 | 1 |
| 1-2. 적 용 | 1 |
| 1-3. 참 조 | 1 |
| 1-4. 약어 및 용어 해설 | 1 |
| 1-5. 책 임 | 2 |

제 2 장 일반 비행 절차

| | |
|---------------------------|---|
| 2-1. 개 요..... | 3 |
| 2-2. 공역통제 및 인가권한 | 3 |
| 2-3. 지역별 인가되는 비행임무..... | 3 |
| 2-4. 비행추적..... | 4 |
| 2-5. 승무원 브리핑 지침..... | 4 |
| 2-6. 비 군사헬기 비행 요구조건 | 5 |
| 2-7. 지도 구비조건..... | 5 |
| 2-8. 장비 구비조건..... | 6 |
| 2-9. 기상 요구조건..... | 7 |
| 2-10. 공역분리..... | 7 |

제 3 장 훈련비행 및 승인 요구조건

| | |
|---|---|
| 3-1. 교관 요구 조건 | 8 |
| 3-2. (RK) P-518 한국전술지대 훈련 및 승인 요구조건 | 8 |
| 3-3. 비행금지구역(비행금지선 포함) 훈련 및 승인 요구조건 | 9 |
| 3-4. 공동경비구역(JSA), 비행회랑 20A 및 H-128 승인 | 9 |

제 4 장 (RK)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비행금지선 이남)

| | |
|---|----|
| 4-1. 개 요 | 9 |
| 4-2.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 | 9 |
| 4-3.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야간비행 | 10 |
| 4-4.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야외훈련간 비행추적(비행금지구역 제외)..... | 11 |
| 4-5.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운용하는 고정익 | 12 |

제 5 장 비행금지구역 비행절차

| | |
|--------------------------------|----|
| 5-1. 개 요 | 12 |
| 5-2. 비행인가 절차..... | 12 |
| 5-3. 통 신 | 13 |
| 5-4.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 | 14 |
| 5-5. 회랑지역 비행..... | 14 |
| 5-6. 회랑을 벗어난 비행요청 | 16 |
| 5-7.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MACHA) | 16 |
| 5-8. 제한구역 절차 위반..... | 17 |

제 6 장 비무장지대 월경방지 경고보조물

| | |
|---------------------|----|
| 6-1. 시각 경고보조물 | 18 |
| 6-2. 경보 신호 | 18 |
| 6-3. 청각경고 | 19 |

| | |
|---------------------------|-----|
| 별첨 가 | 가-1 |
| 참고문헌..... | 가-1 |
| 별첨 나 | 나-1 |
|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구분..... | 나-1 |
| 별첨 다 | 다-1 |
| 비행금지구역 및 회랑지역 구분..... | 다-1 |

약어집

제 1 장

개 요

1-1. 목적. 본 규정은 평시/정전시 회랑 및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의 비행통제를 한국군 및 미군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행절차 및 항공훈련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의 제정 의도는 지상 600피트 이하에서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중교통 및 공역관리를 최대한 허용하도록 관련부대 및 부서간에 원활한 협조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은 정전시 (RK) P-518 한국전술지대와 비행금지구역 내의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예/배속 및 작전통제 된 모든 항공기, 대한민국 국군 / 정부 / 민간 소유의 모든 항공기 포함)에 적용한다. 지상고도 600피트 이상에서 주로 운용되는 비행은 공군구성군사령부(ACC) 규정 60-8(한국완충지대/한국전술지대 비행작전 및 부주의로 인한 비우방국 국경 월경방지 절차)의 조항을 준수한다.

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은 필요시 본 규정의 범위내에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군 조종사들에게 전과 및 교육, 감독 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조종사는 해당국가의 각 군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3. 참조 : 필요한 간행물은 부록 “가”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1-4. 약어 및 용어해설

가.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부록 “나” (용어해설)에서 약어는 부록 “마” (약어해설)에서 설명되며, 본 규정을 숙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다음과 같다.

나.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강화-신도-가평-춘천-속초를 동서로 연결한 북쪽지역으로서 6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전술지대의 설치 목적은 군의 평시 작전의 자유성 확보와 북한군의 공중침투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우군기의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세부지역은 부록 “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구분)에 기술되어 있다.

다. 비행금지구역 비 우방국 국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군 항공기의 이 지역 비행시 권한자의 사전 허가하에 특별히 지정된 절차에 따라 비행하도록 지정된 지역으로 대략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방 5NM(9.3km)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록 “라”(비행금지구역 및 회랑지역 구분)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라. 비행작전본부(FOC)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비행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육군의 항공교통 주 통제부서이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를 통제하는 한국군의 비행작전본부(FOC)는 1군 지역을 통제하는 원주 비행작전본부(FOC), 3군 지역을 통제하는 용인 비행작전본부(FOC)가 있으며, 미군 항공기는 성남에 위치한 FOC-K(Guardian Control)의 통제를 받는다.

마. 비행협조소(FCC) 비행작전본부의 예하부서로서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실시간 항공관제 및 비행정보 제공을 주 임무로 하며, 원주 비행작전본부(FOC) 예하에 4개소(SUN, 동해, GRANT, LEE), 용인 비행작전본부(FOC) 예하에 3개소(봉황, 고니, 기러기)가 있다.

주한미군은 FOC-K(Guardian Control) 예하에 노스 레디오(North Radio)와 사우스 레디오(South Radio)가 운용되고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1-5. 책임.

가. 항공자산을 통제하는 모든 군 지휘관 및 정부기관, 민간항공사의 부서장은 특별히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1) (RK) P-518 한국전술지대와 비행금지구역 내로 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예정된 것이며, 적절히 계획된 것인가, 그리고 비행계획이 해당지역 비행작전본부(FOC) 및 FOC-K(Guardian Control)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14), 승무원이 제 2장에 기술된 항법장비의 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2) 항공대(대)장 또는 그 이상의 지휘관은 사전 인가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운항을 승인하며, 모든 회랑비행시 동 규정 2-5항(승무원 브리핑 지침)에 의한 브리핑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가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특정한 회랑을 지정하고 적절한 훈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 (RK) P-518 한국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조종사 및 승무원에게 임무수행 전 필요한 통신두절, 방향상실, 기상조건, 승인요구조건, 비무장지대(DMZ) 항공기 경고 보조물 및 신호 발견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한다.

(4) 항공기 승무원, 감독 및 임무 브리핑 인원들이 비행금지구역 및 금지선 비행절차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정조종사는

(1) (RK) P-518 한국전술지대 및 회랑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모든 비행에 대한 계획, 준비, 실시의 책임을 진다.

(2) (RK) P-518 한국전술지대 및 회랑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의 비행에 대하여 비행 임무가 적절하고 세부적으로 계획되었는지, 비행준비는 완벽한지를 확인하고, 비행계획을 해당 지역의 비행작전본부(FOC)에 보고(미군은 FOC-K 경유)하며, 회랑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 내 및 비행금지선을 따라 실시하는 모든 비행에 대하여 해지역 야전군(항공과)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회랑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 내의 비행인 경우 인가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비행할 지역의 항로, 특별사용구역, 기상, 항법보조물, 실제비행거리, 항로상 항공기 위치에 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입수 및 활용한다.

(4)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항상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5) 항공기가 비무장지대 상공을 침범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시청각 경고를 모든 승무원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는 항상 UHF 및 VHF 비상주파수를 청취한다.

(7)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는 한국군 비행작전본부(FOC)/비행협조소(FCC) 또는 FOC-K(Guardian Control)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한다. 모든 정조종사는 매 15분(비군용기는 매 10분)마다 위치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관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항공기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 민가 밀집지역, 농작물 및 가축사육장 등 대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회피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다. 비행작전본부(FOC)와 FOC-K(Guardian Control)는

(1) 1, 3군과 24시간 가용한 통신수단을 유지한다. 근무시간내에는 1,3군 항공과, 근무시간 이후에는 1, 3군 지휘통제실과 통신수단을 유지한다.

(2) 해당 1, 3군 항공과와 야간비행 승인여부를 협의한다. 주한미군 항공기에 대해서는 미 164관제단이, 한국군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작사 55항공관제대대가 책임을 갖고 비행추적 및 비행정보 제공업무를 실시하며, 상호 긴밀한 협조를 실시한다.

(3)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모든 비행계획과 비행정보를 통보하고, 비행추적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다.

라. 1, 3군 항공과(공역통제반)는

(1) 가급적 신속히 비행계획을 해당 예하부대에 전파한다.

(2) 요구사항에 대한 통제철을 유지한다. 이 통제철에는 1, 3군 항공과(공역통제반)이 제공한 비행정보 및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한다.

제 2 장

일 반 비 행 절 차

2-1. 개 요. (RK) P-518 한국전술지대(비행금지구역 포함) 비행시 전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를 언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2-2. 공역통제 및 인가 권한.

가. (RK)P-518 한국전술지대 내 지상 600피트 이하에서의 공역통제권은 해당 지역 한국 육군 1, 3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각 군 항공과 또는 공역통제반(AME), 비행작전본부(FOC), 비행협조소(FCC)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나. (RK)P-518 한국전술지대 내 지상 600피트 이하에서의 야간비행과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금지선을 따라 실시하는 비행임무에 대한 비행 인가권은 해당 지역 한국 육군 1, 3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각 군 항공과 또는 비행작전본부(FOC)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의 지상 600피트 이상에서 수행되는 모든 임무와 (RK) P-518 한국 동·서부 전술지대 내 지표면 이상에서의 비행 인가권은 공군 구성군 사령관에게 있다.

라.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구역에 대한 공역통제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5장 5-7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는 비무장지대(DMZ) 진입 또는 횡단 비행을 금지한다.

2-3. 지역별 인가되는 비행임무

가. 비행금지구역

(1) 긴급작전 임무

(2) 한국군/유엔사/주한 미군을 직접 지원하는 필수적인 항공 임무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 (3) 긴급구조, 의무후송, 산불진화 등 긴급 재해재난 임무
- (4) 필수적인 보급, 행정, 군수지원 임무
- (5) 한국 제1, 3군 사령관에 의해 해당 관할구역내 인가된 필수적인 전술훈련 임무
- (6) 비행금지구역 내의 야간비행(일몰~일출)은 금지한다. 단 군사행기에 의한 긴급작전, 긴급구조 및 의무후송, 유엔사 군사정전위(UNCMAC) 특별조사 임무에 한하여 1, 3군 사령관의 승인하 비행이 가능하며, 이때는 중앙방공통제소(MCRC)과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1, 3군 항공과 및 지상부대까지 최단시간 전파되어야 한다.
- (7) 정부기관 및 민간항공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위한 2-6 ~ 2-9항에 명시된 추가 요구조건이 충족된 임무(단 야간비행 제외)

나. (RK) P-518 한국전술지대(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

- (1) 2-3-가 항에 열거된 모든 임무
- (2) 항공기 보유부대장이 승인한 임무. 단, 비행금지선을 따라 비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군 사령관 인가를 득한 임무
- (3) 정부기관 및 민간항공기의 경우 2-6항에 열거된 (RK)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을 위한 추가 요구 조건이 충족된 임무

2-4. 비행추적. 비행추적은 한국 육군 비행정보 간행물, 미 국방성 비행정보간행물 및 1, 3군 예규의 지시를 따른다.

2-5. 승무원 브리핑 지침. 임무수행 브리핑과 임무 후 브리핑에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가. 비행로상의 식별 가능한 저명한 지형지물이나 항법 보조물, 회랑비행시 제한사항
- 나.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시 절차.
- 다. 공중교통 통제주파수 및 보고 절차.
- 라. 항법 책임.
- 마. 장비 요구조건.
- 바. 항공기 월경방지 경고보조물.
- 사. 식별 부호(Orbit Codes).
- 아. HOT DOG 및 JACK RABBIT 절차.
- 자. 돌발적인 악기상 조건하 계기회복 절차.
- 차. 자만의 위험.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카. 위기 관리

2-6. 비 군사헬기 비행 요구조건.

가. 비 군사헬기(정부 및 민간헬기)는 비상 재해 시 구조 구난 및 산불진화, 의무후송 관련 긴급임무 수행을 위해 (RK)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비행할 수 있으며, 단 비무장지대(DMZ) 및 한강하구 지역의 긴급임무수행시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정전위 비서처로 비행승인을 요청한다. 이를 제외한 비 군사헬기(정부 및 민간헬기)의 비행은 비행금지선(NFL) 이남 지역까지의 주간비행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한국 합참의 승인을 득한 후(월 단위 인가), 실제 비행이 계획되면 각 군 항공과에 비행 1일전 14:00까지 비행에 필요한 협조 및 승인/인가번호를 부여 받아 비행한다. 이때 지상 600피트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공구사 규정(ACCR) 60-8에 의거 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추가 승인이 요구된다.

나. 비상재해 시 구조 구난 및 산불진화, 의무후송 관련 비 군사헬기의 비행계획 및 운항승인은 해당 지역 1, 3군 사령관에게 있다. 이때 1, 3군사령부의 지휘통제실에서는 비 군사헬기의 비상재해 시 구조 구난 및 산불진화, 의무후송 관련 운항내용을 즉시 연합사령부 서울지휘소에 있는 한측 및 미측 비상작전본부(지휘통제실) 및 한국 합참 군사종합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을 비행시는 추가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상기내용을 비행작전본부(FOC) 경유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파한다.

다. 한국 비 군사헬기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상재해 시 구조, 구난 및 산불진화, 의무후송, 긴급임무를 수행할 경우, 해지역 작전지휘관(사단장/연대장) 및 군 공중통제기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군 헬기의 선도비행이나 비 군사헬기에 항법사를 탑승시켜 임무를 수행하고 선도헬기의 조종사나 항법사는 반드시 해당 비행금지구역 비행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비행금지구역 내의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라.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는 육군 고각사격이 수시로 실시되므로 비행작전본부(FOC)와 비행계획 협조시 비행경로 및 임무지역에서의 고각 사격계획을 확인하고, 비행시에는 군 관제기관(FCC 및 MCRC)과 지속적인 교신으로 비행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2-7. 지도 구비조건

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는 모든 조종사는 1:5만 특수지도(L754 계열)를 휴대하고 비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저명한 지형지물, 제한구역, 참조점, 육안 참조물 등에 대한 숙지는 지형을 식별하고 위규 비행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모든 항공부대, 지휘통제부대 및 조종사는 지도에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군사 분계선,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 (2) 비행금지구역(한국완충지대:KBZ)
- (3) 비행금지선 및 비행회랑
- (4) (RK) P-518 한국전술지대 및 (RK) P-518 한국 동·서부 전술지대
- (5) 한국 육군 제 1,3 야전군 전투지경선.
- (6) P-73 A/B 공역 및 시계비행로
- (7) 제한 및 금지공역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 (8) 고밀도 훈련구역
- (9) 비행 항로상 항공부대 위치 및 관제권(부록 “나” 용어해설 한국 육군항공 기지 참조)
- (10) 기타 필요한 비행정보(NOTAM, 사격장 등)

다. 모든 지도의 좌표는 범세계 지도 체제 WGS-84 지도자료에 근거한다.

2-8. 장비 구비조건.

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작전수행중인 항공기는 아래에 기록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 헬기와 경고정의 재래식 항공기는 전술항법장비(TACAN)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나. 항법 보조장비

(1)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작전중인 모든 미군 헬기는 정상 작동하는 GPS 또는 INS를 갖추어야 한다. 편대비행 시에는 최소한 선두항공기는 GPS 또는 INS가 운용되어야 하며, 지휘관은 가능한 한 많은 항공기가 GPS 또는 INS를 구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항공기 설치 장비를 이용하고 만일 항공기에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적합하면 휴대용 GPS(PLGR)를 사용한다.

(3) 단독 비행하는 모든 고정익 항공기는 거리측정장비(DME)가 있는 정상 작동하는 TACAN을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

(4) 정상 작동하는 무선 자기지시계(RMI)와 예비 콤팩스 장착.

다. 통신장비

(1) 2대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전기를 장착해야 한다. 그 중 한대는 UHF 또는 VHF 비상주파수로 교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FM 무전기라야 한다. 단, 비군사헬기가 긴급임무(산불진화, 의무후송, 재해재난)을 수행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승무원 상호간 통화가 가능한 정상 작동하는 항공기내 통신장치.

라. 피아식별장비

(1)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정상 작동하는 트랜스폰다 및 MODE I, II, III, IV가 장착되어야 하고, 공구사 규정 60-8에 의거하여 트랜스폰더를 작동하여야 하며 공구사 규정 55-3에 의거 모드코드(군 항공기는 지정 코드, 비 군사헬기는 시계비행 코드)를 정확하게 장입 및 송신하여야 한다.

(2) 만약 비행중 어느 장비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항공기는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작전을 수행 할 수 없다.

(3) 장비 비정상 상황을 인지한 조종사는 비행작전본부(FOC) / 비행협조소(FCC) 및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장비 이상 사실을 통보하고, 만약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모기지가 위치한 경우에는 기지로 복귀한다.

주의 : “운용”은 장비를 켜고 적절히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을 뜻하며 장비 고장은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2-9. 기상 요구조건.

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비행금지선 및 비행금지구역 제외) 기상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으며, 600피트 이상을 비행할때는 공구사 규정 60-8을 참조하고, 항공기는 운중 비행을 금한다.

| 항공기 | 주 간 | 야 간 |
|-----|-----------------------|---|
| | 지상 600피트 이하 | 지상 600피트 이하 |
| 회전익 | 운고 : 500피트, 시정 : 1마일 | 1000피트, 3마일(야시경 미사용) 1000피트, 1마일(야시경 사용) |
| 고정익 | 운고 : 1000피트, 시정 : 3마일 | 운고 : 1000피트, 시정 : 3마일 |

※ 긴급임무가 지시되었을 때, 항공대대(대) 지휘관은 (RK) P-518 한국전술지대내의 최저 기상조건이 운고 500피트 시정 1마일 이하의 상태라도 주간시계비행(VFR)을 인가할 수 있으나 최저 기상조건이 운고 500피트 시정 1/2마일 이하일 때에는 불가하다.

나. 비행금지구역 비행시 기상요구조건

| 항공기 종류 | 주 간 | 야 간 |
|--------|-----------------------|-----------------------|
| | 지상고도 600 피트 이하 | 지상고도 600 피트 이하 |
| 회전익 | 운고 : 500피트, 시정 : 2마일 | 운고 : 1000피트, 시정 : 5마일 |
| 고정익 | 운고 : 1500피트, 시정 : 5마일 | *주의 참조 |

* 주의: 비행금지구역 야간비행은 제 2장, 하부조항 2-3 가 (8) 소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2-10. 공역분리.

가. 고도분리

(1) 회전익 항공기 작전은 AGL 600피트 이하에서 수행되며, AGL 600피트 에서 AGL 800피트까지의 고도범위는 고도분리를 위한 완충공역으로 사용된다.

(2) 일시적 진입을 제외한 AGL 600피트 이상에서의 회전익 임무는 비행작전본부(FOC) 및 비행협조소(FCC), FOC-K(Guardian Control)를 통하여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협조하고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및 무선 교신하에 비행하여야 한다.

나. 구역분리

(1) 비행인가와 효과적인 비행추적 및 통제를 위하여 비행금지구역은 6개구역(구역 I~VI)으로, (RK) P-518 한국전술지대 또한 6개 구역(S, T, V, W, X 및 Y)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구분과 부록 “라” 비행금지구역 및 회랑지역 구분에 기술되어 있다.

제 3 장

훈련 비행 승인 요구 조건

3-1. 교관 요구조건

가.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관”이란 용어는 지휘관에 의해 임명된 부대교관(UT), 교관조종사(IP), 또는 표준교관조종사(SIP)중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들 교관에 의해서 (RK) P-518 한국전술지대와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금지선의 소개비행과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이 실시된다.

나. 모든 교관은 지도 없이 비행금지선(NFL)및 회랑에 대한 정확한 항법과 지형지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회랑지역 교육비행시 반드시 회랑이 도식된 지도를 휴대하고,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시 비행절차, HOT DOG 및 JACK RABBIT 발령시 절차, 맹목통신 송신 등의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교관은 어떠한 항공기로도 비행훈련 또는 자격획득 비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1) 교관은 비행조종이 불가능한 승무원석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비행훈련 또는 자격획득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

(2)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비행자격이 없는 조종사의 교육비행 혹은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시 2-5항에 의한 항공임무 브리핑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교관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회랑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기 위해 120일 마다 비행을 실시해야 하며, 자격이 유효한 유자격 교관은 다른 교관을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마. 한국군 조종사의 훈련 및 승인은 해당부대 내규에 따르며, 주한미군 조종사에 대한 훈련 및 승인에 대한 문서작성은 미 8군 규정 95-1(일반 비행규정 및 비행절차, 훈련 지침)에 따른다.

3-2. (RK) P-518 한국전술지대 훈련 및 승인 요구조건.

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 S, T, V, W, X 및 Y 구역에서 비행하기 위한 조종사 훈련 및 승인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전술적 예외지역은 제외된다.

(1) 모든 조종사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 대한 소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개 교육은 비행금지선, 각 구역내 중요지형지물,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시 비행요령, HOT DOG 및 JACK RABBIT 발령시 조치 등을 중심으로 교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조종사는 소개교육 후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구역 및 비행금지선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비행임무에 투입되어야 한다.

(2) 교관은 조종사가 지도를 참조하여 비행금지선 및 비행금지선 전방으로 비행할 수 있고 해당구역 경계선을 숙지했다고 판단시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 대한 비행 승인을 건의한다.

(3) 최초 교육 및 승인비행 후 조종사는 자격유지를 위해 180일 마다 (RK)P-518 한국전술지대에 대한 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4)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편대비행시, 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편대를 유지한다면 선두기만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 대한 자격이 요구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3-3. 비행금지구역(비행금지선 포함) 훈련 및 승인 요구조건.

가. 비행금지선 및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한 조종사 훈련 및 승인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조종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행금지선 및 비행금지구역, 회랑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유자격 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모든 조종사들은 교관에 의한 교육 후 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 회랑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비행임무에도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2) 조종사는 비행금지구역, 비행회랑 및 비행금지선에서의 비행자격 획득을 위해 교관에 의해 180일을 기준으로 6회(평가비행 포함)이상 교육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교관 조종사는 조종사가 지도를 참조하여 비행금지구역을 항법할 능력이 있고 본 규정과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14(비행정보 및 비행추적 업무)에 포함된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6회의 비행전이라도 비행자격 승인을 건의할 수 있다.

(3) 한국군 각 부대는 교육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부대별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교육비행 실적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미 8군 조종사의 훈련 및 승인에 대한 문서작성은 미 8군 규정 95-1에 따른다.

나. 조종사는 비행금지구역(각 비행회랑)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90일마다 비행을 해야 한다. 매 90일마다 비행금지구역을 1회 이상 비행한 조종사는 평가에서 면제된다.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1:5만 비무장지대 특수지도를 참조하여, 비행이 요구되는 비행금지구역을 항법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위해서는 정조종사의 자격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군은 부득이 한 경우 자격이 없는 정조종사는 유자격 부조종사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편대 비행인 경우, 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편대를 유지한다면서 선두기만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자격이 요구된다.

3-4. 공동경비구역, 비행회랑 20A 및 H-128 승인. 비무장지대 남쪽 경계선의 북쪽에 있는 회랑 20A에서의 비행을 위한 조종사 승인 절차로는 H-127과 H-128 사이의 지형을 6개월마다 지상예비교육을 받고 정조종사나 부조종사로써 H-128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2회 왕복해야 하며, 이때 정조종사로서 1회 이상 왕복 하여야 한다. 지상예비교육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 4 장

(RK)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비행금지선 이남)

4-1. 개요. 부록 “다”에 기술된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선 및 회랑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을 참조한다.

4-2.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

가. 통신두절

(1)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되면, 정조종사는 임무수행을 중지하고 맹목통신으로 무선 송신을 실시한 후 MODE III CODE 7600을 장입하고 모기지로 복귀한다. 통신두절로 비행이 중단되면, 정조종사는 착륙 즉시 비행작전본부(FOC) 또는 FOC-K(Guardian Control)에 통보하고 비행작전본부(FOC) 및 FOC-K(Guardian Control)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통보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2) 만약 통신이 재개되면 비행을 계속할 수도 있다

나. 방향상실

(1) 만약 승무원이 (RK) P-518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정확한 위치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기수를 150도 내지 170도로 유지하고, 비행통제기관에 통보하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비행한다. 이때 조종사는 해당 지역의 비행협조소(FCC) 또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2) 선회시간, 정확한 기수방향 및 기수로 비행한 시간,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었을 때의 항공기 위치를 잘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사항은 비행위반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만약 비행위반이 되었다면 본 규정 제 5장, 5-8항에 따른다.

(3) 비행방향을 남쪽으로 하면 (RK) P-73 지역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K) P-73 인근지역에서 운용중인 항공기는 육군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미 국방성 비행정보간행물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 재진입 및 계속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어야 하고, 1, 3군 항공과 또는 공역통제반(AME)이 공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명해 주면, 비행작전본부(FOC)나 FOC-K(Guardian Control) 또는 비행협조소(FCC)와 협조 후 허가 한다.

4-3.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야간비행.

가. 비행금지구역은 제외한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일몰과 일출사이에 비행을 요하는 모든 한·미 조종사는 해당 비행작전본부(FOC)나 또는 FOC-K(Guardian Control)를 통해 임무지역 군 항공과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보고(제출)하고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야간 비행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나. 비행계획은 이륙전 12시간-2시간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내(비행금지구역 제외)에서 야간비행 인가를 받기 위해 임무 1군무일 15:00까지, 해당 비행작전본부(FOC)에 다음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 (1) 선두기 호출부호.
- (2) 항공기 종류 및 대수.
- (3) (RK) P-518 한국전술지대 진입지점.
- (4) (RK) P-518 한국전술지대 진입시간.
- (5) 비행항로 또는 고밀도 훈련지역(HDTA) (P-518 또는 고밀도 훈련지역에서 각 목적지에 대한 항로 및 지상대기시간 포함).
- (6) (RK) P-518 한국전술지대 이탈지점.
- (7) (RK) P-518 한국전술지대 이탈시간.
- (8) 조종사 성명.
- (9) 임무형태.
- (10) 연락처(요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11) 요청서를 제출한 요원의 이름 머리글자.

(12) 의무후송(MEDEVAC) 또는 REDCATCHER와 같은 비상임무를 위하여 특별히 조종사가 요구하는 사항.

(13) 비고(VIP코드 등).

라. 비행계획 제출시간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비행작전본부(FOC)나 FOC-K(Guardian Control)은 해당 공역통제반과 협조한다.

마. 비행작전본부(FOC)와 1, 3군 항공과(공역통제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 비행협조소(FCC)와 지상부대에 비행계획을 신속히 전파한다. 비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 3군 항공과(공역통제반)에서 승인할 때까지 비행이 연기된다.

바. 만일 임무가 취소되면, 조종사는 비행작전본부(FOC)나 FOC-K(Guardian Control)에 통보해야 한다. 비행작전본부(FOC)나 FOC-K(Guardian Control)은 해당 항공과에 취소 사실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

사. 만일 임무가 승인되지 않으면 항공과는 비행작전본부(FOC)나 FOC-K(Guardian Control)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비행작전본부(FOC)는 요청 항공부대 작전과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

아. 긴급 의무후송 및 REDCATCHER 임무는 별도의 호출부호를 사용하여 즉시 승인을 얻는다. 이 임무는 장성급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제 5항, 5-5항 라 (1) (2)에 열거된 장성들은 전술적 비상상황하에서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의 야간비행 인가권을 가진다.

4-4.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 야외훈련간 비행추적(비행금지구역 제외).

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야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항공부대는 해당 1, 3군 항공과에 늦어도 5군무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음사항은 해당 1, 3군 항공과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 (1) 훈련지역(집결지 및 FARP 위치, 비행경로).
- (2) 훈련일(기간).
- (3) 항공기 기종 및 대수.
- (4) 임시 타워 명칭 및 운용 주파수.
- (5) 연락처와 전화번호.
-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다음 절차는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서 항공부대의 야외훈련 동안에 지휘관이 그 부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열거한 사항이다.

(1) 요청부대는 항공정보를 발간 배포할 수 있도록 1, 3군 항공과 또는 비행작전본부(FOC)에 늦어도 훈련일 5군무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2) 훈련지역에 진입 또는 이탈하는 모든 항공기는 본 규정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비행작전본부(FOC) / 비행협조소(FCC) 및 FOC-K(Guardian Control)에 완전한 비행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3) 훈련지역에 전개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는 야외훈련부대 작전과에 비행계획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부대 작전과는 해당 비행작전본부(FOC)에 비행계획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비행작전본부(FOC)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4) 야외훈련부대 작전과는 훈련지역 최초 임무수행시 해당 비행작전본부(FOC)에 훈련이 개시된다고 통보하고, 당일의 마지막 항공기가 착륙 종료 했을 때 다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5) 해당 비행작전본부(FOC)는 전 훈련기간에 걸쳐 중앙방공통제소가 훈련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신속한 식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중교통 사항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4-5.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운용하는 고정익. (RK) P-518 한국전술시대 내의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운용하는 고정익항공기는 임무 1일전 관제계통으로 비행계획을 전파하고, 공군구성군사령부 규정 60-8에 따라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 감시 및 무선 교신하에 비행해야 한다.

제 5 장

비행금지구역 비행절차

5-1. 개 요.

가. 비행금지구역은 비행금지선, 비행금지선의 북쪽회랑 및 비행금지선 북쪽 회랑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비행금지선 북쪽에서 작전중인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탑승객은 임무수행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용 카메라, 쌍안경, 녹음기 등을 절대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

5-2. 비행인가 절차. 다음은 비행금지선, 비행금지구역/회랑비행시 비행계획 요구조건이다. 야간비행계획 요구조건은 4-3항((RK) P-518 지역내 야간비행)에 기술되어 있다.

가. 조종사(또는 항공기 보유 부대 및 기관)는 1, 3군에서 인가번호를 얻기 위해 비행 1군무일 전 15:00까지 모든 훈련과 비행금지구역 작전에 대한 인가요청을 해당지역 군항공과 및 비행작전본부(FOC)에 제출 한다. 다음 사항은 비행금지구역 인가를 위해 해당 지역 군 항공과 및 비행작전본부(FOC)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이다.

(1) 항공기(편대비행시 선두기) 호출부호.

(2) 항공기 종류/대수 및 예상비행고도(지상고도).

(3) 비행금지선 또는 회랑 진입지점.

(4) 비행금지선 또는 회랑 진입시간(비행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 가능, 실제 진입시간은 계획서 상의 예상 진입시간에서 15분 편차 이내이어야 함).

(5) 회랑을 이탈한 비행금지구역 내로의 비행인 경우 비행로의 좌표와 비행항로(비행금지구역 내의 각 목적지 항로 및 지상대기 시간 포함).

(6) 비행금지선 또는 회랑 이탈지점.

(7) 회랑 이탈시간(조종사는 15분 이상 예상 이탈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역 비행작전본부/군항공과(AAD)와 적절한 협조 후 예상 이탈시간 전에 이탈할 수 있으며 회랑이탈을 협조한 부서에서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 (8) 조종사 성명.
- (9) 임무형태.
- (10) 연락처 (요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및 전화번호
- (11) 요청서를 제출한 요원의 이름 머리 글자.
- (12) 비고(VIP 코드, 기타).

나. 비행금지구역 내의 비행승인 요청을 받은 군 항공과는 공역사용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공역통제반과 사전 협조 후 공역통제반의 동의 하 비행승인을 사령관에게 건의한다.

다.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승인에 관해 1, 3군 사령관은 부대내규에 의거 위임할수 있으나, 위임받은 승인권자의 승인된 사실이 서면 지시 또는 서면 동의로 남아 있어야 한다. 단 긴급 또는 시간이 급박한 임무에 한하여 구두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라. 비행금지구역내의 비행승인 사항에 대하여 각 군 항공과는 해 지역 비행작전본부(FOC) 및 중앙방공통제소(MCRC)로 통보 및 지휘계통으로 해 지역 모든 지상부대에 비행계획을 전파하며, 이때 비행계획의 전파 완료까지는 인가번호를 전파하지 않는다.

마. 비행금지구역내의 지상 600피트 이하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해당 군사령부에서 제공한 인가번호를 소지하여야 한다.

바. 비행금지구역내 비행승인 인가번호는 모기지에서 동시에 이륙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비행중 편대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 할 경우, 하나의 동일한 인가번호만 부여하며, 두개의 편대로 분리되는 관계기관을 경유 군 항공과의 승인을 득하고 별도의 인가번호를 부여 받은 후 가능하다.

사. 비행계획은 회랑진입 24~2시간전에 비행작전본부(FOC) 또는 FOC-K(Guardian Control)에 접수 되어야 한다. 부대는 인가 요청시 시간을 지켜야 하며, 해 지역 항공과에서 비행승인이 나면 비행작전본부(FOC) 또는 FOC-K(Guardian Control)는 해당 항공기의 비행을 인가한다.

아. 정부 및 민간소유 항공기는 한국 합참 예규에 근거한 모든 조치가 서면으로 확인되고 본 규정 2-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을 승인한다.

5-3. 통 신.

가. 비행금지구역에서 작전 중이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추적기관과 상호 무선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 이탈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모든 조종사는 최기 비행작전본부(FOC) 또는 비행협조소(FCC)에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1) 회랑진입 시간 및 위치. 최초 회랑진입시간은 인가된 예상 진입시간의 15분 편차이내이어야 한다.
- (2) 각 착륙지점에 도착 및 출발시간과 비행금지구역에 있는 동안 추가로 항공기가 비행회랑을 통과하거나 진입하는 시간.
- (3) 비행금지구역 이탈시간 및 위치.
- (4) 항로 변경사항.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5) 비행추적 업무에 필요한 정보.

(6) 해당 비행회랑을 관장하는 비행작전본부(FOC)에 매 10분마다 보고하고 중앙방공통제소(MCRC) 및 비행작전본부(FOC), 비행협조소(FCC)에서 요청시 보고해야 한다.

다. 비행금지구역 I, II, III 지역 비행은 FCC 기러기, FCC 고니, North Radio가 추적한다.

라. 비행금지구역 IV, V, VI 지역 비행은 FCC 고니, FCC Lee, FCC Grant, FCC Sun, 또는 최근접 관제기관과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마. 조종사는 각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할 때 그 해당 비행추적기관으로부터 다음 관할기관으로의 적절한 주파수 변경을 요청할 책임이 있다.

5-4. 통신두절 및 방향상실.

가. 통신두절

(1) 비행금지구역에 있는 동안 상호 무선통신이 두절되면, 정조종사는 임무수행을 중지하고 최단 회랑을 경유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이탈한 후, 맹목통신으로 무선 송신을 실시한다.

(2) 만약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이탈하기 전에 통신이 재개되면,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만약 통신두절로 비행이 중도에서 중지되면, 정조종사는 착륙 즉시 해당 비행작전본부(FOC) 또는 FOC-K(Guardian Control)에 통보하고 비행작전본부(FOC) 및 FOC-K(Guardian Control)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방향상실

(1) 승무원이 (RK) P-518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정확한 위치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기수를 150도 내지 170도로 유지하고, 비행통제기관에 통보하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비행한다. 이때 조종사는 해당 지역의 비행협조소(FCC) 또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2) 선회시간, 정확한 기수방향 및 기수로 비행한 시간,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었을 때의 항공기 위치를 잘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사항은 비행위반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만약 비행위반이 되었다면 본 규정 제 5장, 5-8항에 따른다.

(3) 조종사는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고 공역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임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5-5. 회랑지역 비행.

가. 비행금지구역 내 회랑지역에서 비행하려면 승무원 및 항공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비행금지구역 회랑에서 운용되는 모든 단독비행 항공기는 정확한 항법비행을 위해 반드시 해당 회랑지역의 비행자격을 보유한 조종사를 한명 이상 탑승시켜야 하며, 회랑을 담당하고 있는 작전 책임부대의 항공대 또는 인근 항공부대는 타부대에서 항법사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가용한 조종사를 지원해야 한다.

(2) 단일 편대장 통제하에 여러 항공기가 비행하고자 할 때 편대장은 비행하고자 하는 회랑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편대장이 회랑지역 비행자격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회랑비행 자격을 보유한 조종사가 동승하여 비행금지구역 및 회랑 비행중의 항로를 관측하고 항공기의 항법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만약 항공기가 편대에서 나오되면 정조종사는 회랑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이탈해야 한다.

(3) (RK) P-518 한국전술지대 북쪽으로 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시 영공통과 항공기는 예정 이륙시간 48시간 전까지 주한미군 항공처에 미군항법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항법사를 탑승시킬 경우 승무원은 지원 항법사에게 작동 가능한 헤드셋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항법사가 비행추적기관과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항법사는 항공기 비행로를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4) 비행금지선을 따라 비행할 경우 최대 비행속도는 120노트이며, 비행금지선 북쪽에서의 최대 비행속도는 70노트이다. 단, 방공경보수신 및 적의 공격위협을 피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승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요구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조종사는 비행계획이 해지역 군 항공과에 의해 승인된 것을 확인하고 비행회랑 진입을 허락받기 위해 적어도 회랑 진입 15분 전에 무전기로 해당 비행작전본부(FOC) / 비행협조소(FCC)를 호출해야 한다. 비행작전본부(FOC)나 비행협조소(FCC) 로 부터 지상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의미하는 비행인가 번호를 재확인함이 없이는 회랑을 진입할 수 없다.

(2) L 754 계열, 축척 1:5만 특수 비무장지대 비행지도에 표시된 지점에서만 회랑을 진입 및 이탈한다.

(3) 회랑 내에서의 비행은 회랑이 설정된 주위 중요지형지물(회랑 중심선)의 오른쪽으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회랑 중심부에 근접하여 비행한다.

(4) 모든 임무는 지상고도 600피트를 초과하지 않고, 비행안전 및 항법시 고려사항과 부합되는 최저고도로 비행해야 한다.

(5) 회랑비행은 예상 비행시간을 준수하면서 비행해야 한다.

(6) 작전상 중요임무를 수행하거나 긴급 재해재난 구조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비행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회랑비행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5-6 다. 라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육군의 1군 또는 3군 항공과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인가되지 않는다. 해당 군항공과에 비행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를 요청할 비행관제기관과 접촉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는 회랑 및 비행금지구역내 야간비행이 금지된다.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예외: 군사행기에 의한 긴급 작전, 긴급 구조구난 및 긴급 의무후송 임무, 유엔사 군사정전위(UNCMAC) 특별조사임무 등이며, 이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 3군 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회랑비행 절차에서 예외로 한다.

(1) 유엔사/연합사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유엔사 군사정전위 위원장; 연합사 작전참모부(차)장; 합참 작전본부(부)장; 한국육군참모총장; 한국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한국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은 항공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랑 이탈을 인가할 수 있다.

(2) 한국군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회랑 이탈을 인가할 수 있다. 이 인가권은 장성급 부사령관이나 장성급 참모장에게 위임될 수 있으나, 그 이하로는 위임할 수 없다. 비행회랑을 벗어난 비행은 5-6항(회랑을 벗어난 비행요청)의 절차를 따른다.

(3) 긴급작전, 구조구난 및 의무후송, 산불진화 등 긴급 재해재난 지원임무는 상기 지휘관의 특별승인 없이도 비행회랑 밖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조종사는 비행작전본부(FOC)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 비행협조소(FCC)와의 협조 하에 비행해야 하며, 비행작전본부(FOC) / 비행협조소(FCC)는 해당 지역의 군 항공과에 통보해야 한다.

(4)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반 지원임무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비행회랑 이탈이 허용된다.

(5) 회랑을 벗어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는 그 착륙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회랑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비행금지구역으로의 진입이 허용된다. 이때 항법사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5-6. 회랑을 벗어난 비행요청

가. 비행회랑을 벗어나 비행하려는 비행승인 요청은 착륙지점과 그 예상 착륙지점 진출입 좌표를 첨부한다.

나. 비행회랑을 벗어난 비행 요청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지역 군 사령부 항공과에서 수행하며, 요청은 예정된 비행 1근무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 비행금지구역내 비행회랑을 벗어난 비행요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1) 상세한 지도 (좌표와 경계선으로 지역 식별).
- (2) 임무 목적 및 지원 부대.
- (3) 진입 및 이탈 지점, 탑승지역, 착륙지역 그리고 항로.
- (4) 재급유 지점.
- (5) 한국인 항법사 탑승지점(필요한 경우).
- (6) 임무의 일자 및 시간.

라. 비행승인을 요청한 부대의 작전참모부는 해당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야전군 사령부의 군 항공과와 협조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5-7.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MACHA).

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 공동경비구역(JSA)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비행장을 운영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비행장은 H-128로 명명되었으며 군사정전위 본부지역(MACHA)의 공동경비구역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나. H-128 및 회랑 20A로의 모든 비행은 늦어도 임무 7근무일전까지 승인 받아야 된다. 요청계통은 연합사 항공처를 경유하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장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임무는 정전협정, 유엔사 규정 551-4 (휴전협정 준수)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다음 절차는 H-128으로의 모든 비행에 적용된다:

- (1) 비행고도는 지상고도 50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2) 주간비행만 수행한다.
- (3) 비행은 회랑 20 및 20A를 사용해야 한다. 철책선 횡단시 회랑폭은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400미터이며 가능한 한 도로상공을 따라 근접하여 비행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4) 항공기는 유엔사 규정 551-4에 의거 항공기 동체에 노랑 3선으로 표시한다.

(5) 승무원은 황색완장을 착용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 위원장이 발급한 유엔사 양식 9EK(군사정전위원 신분증)을 지참한다.

(6)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는 H-128로의 모든 비행을 위해 항법사를 지원한다. 항법사는 비무장지대(DMZ) 남쪽 경계선을 횡단하기 전에 H-127에서 탑승한다.

(7) 조종사는 회랑 20A 진입 및 이탈지점에서 보고해야 하고, H-127에서 위치보고를 실시하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진입 및 이탈시와, H-128에 착륙 및 이륙시 보고해야 한다.

(8) 최초 비행계획에서 벗어나 비행해야 하는 상황 또는 비상 상황시 비행작전본부(FOC)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접수되면 해당 비행작전본부(FOC)는 유엔사 정전위로 이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5-8. 제한구역 절차 위반.

가. 한.미군 항공기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 비무장지대(DMZ) 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금지선 침범시 한.미군은 지휘계통을 통해 한국합참 지휘통제실 및 연합사 서울 지휘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나. 위반에 연루된 항공부대의 지휘관은--

(1) 실제위반이건 추정위반이건 보고받은 즉시, 지휘계통을 경유하여 가장 신속하게 한국 합참 지휘통제실 및 연합사 서울 지휘소로 보고해야 한다.

(2)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한다. 관련된 승무원은 추정위반 또는 실제위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비행임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항공기 전자장비 및 항법장비는 사용 전에 해당 전문기관에 이상유무 검사를 의뢰한다.

(다) 대령급 이하 탑승객은 항공기 및 승무원과 함께 잔류하여 조사장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 사건접수 즉시, 한국 육군규정 351(육군항공 운용 규정) 또는 미 육군규정 15-6에 의거하여 추정 또는 실제 위반사항 조사에 착수한다.

(4) 조사장교가 승무원, 탑승객, 통제기관 및 지상 또는 공중 관측자로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도록 보장한다.

(5) 조사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 한국군은 한국 합참으로, 미군은 유엔사/연합사 사령관(참조: CFCD-AV, 부대번호 15255, 군우 96205-0028)에게 제출한다. 이 조사결과는 사건 발생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한국 합참과 유엔사/연합사는 조사 결과를 실시간에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다. 관련된 항공기의 승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사실을 발견한 즉시 소속지휘관에게 통보한다.

(2) 조사장교가 떠나는 것을 승낙할 때까지 항공기에 남는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3) 조사장교가 떠나는 것을 승낙할 때까지 모든 승객(대령급 이하)이 항공기에 남아 있도록 한다.

라.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지역에 대한 침범은 정전위반사항으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유엔사 군사정전위 특별조사반은 유엔사 군사정전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무장지대에 대한 실제 또는 추정 위반을 정전협정 및 유엔사 규정 551-4에 의거 조사한다.

제 6 장

비무장지대 월경방지 경고보조물

6-1. 시각 경고보조물.

가. 비무장지대(DMZ) 침범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한 시각 경고 보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현 위치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 시각 경고 보조물을 발견시는 남동쪽(150도 ~ 170도 방향)으로 기수를 돌려 비행하여야 한다.

(1) “T”자형 항공기 경고표지물(14x17미터)

(가) “T”자형 항공기 경고표지물은 T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남쪽 약 2,000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2,000미터 간격으로 공중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중요 지형지물의 정상부근 남쪽사면에 설치되어 있다.

(나) 한국군 1, 3군사령관은 각각의 관할지역 내의 T자 표지물을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연 4회의 공중점검을 통해 표지판이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

(2) 오렌지색 항공기 경고표지판(2x2.4미터)

(가) 오렌지색 항공기 경고표지판은 비무장지대로의 우발적인 월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향한 주황색으로 도색된 표지판들을 300-400미터 간격으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나) 가끔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북쪽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표지판에 흰색으로 X자가 표시되어 있다. 철책선이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보다 북쪽으로 들어가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의 남쪽 향으로 비행 하는데 있어서 철책선이나 항공기 경고 표지판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다) 오렌지색 항공기 경고 표지판의 점검은 유엔사 군정위와 연합사 작전참모부 항공처가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항공기 경고 표지판의 유지작업은 경고판이 위치한 지역의 지상부대가 실시한다. (참조: 비무장지대 항공표지판에 대한 대한민국 육군 및 주한미군간의 합의각서 : 육본 작참부장과 주한미군 작참부장 서명, '84. 1. 10)

6-2. 경고 신호.

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모든 초소,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일대의 관측소 및 초소근무자는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의 월경비행을 경고하기 위한 아래의 경고 신호용 도구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한다.(유엔사 규정 551-4 휴전협정준수 참조)

나. 초소 근무자는 항공기가 남방한계선 상공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이 경고용 장비를 사용토록 교육 및 지시 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적색/백색 오성신호탄 및 적색/백색 낙하조명탄, 적색 지상 연막탄을 사용한다. 이 같은 신호탄을 발사시, 항공기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를 조준해서 발사해서는 안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다. 공중 조명신호탄 및 지상연막탄을 발사 후에도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으로 접근 또는 월경시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5.56밀리 예광탄을 발사한다. 이 경우 항공기에 의도적으로 조준사격을 해서는 안된다.

라. 조종사는 이러한 경고신호를 보는 즉시 남동쪽으로 기수를 돌려 비무장지대(DMZ) 및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벗어나야 하며, 확실한 자기위치를 판명한 후에는 임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임무 실시후에는 경고신호 수신상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합참과 주한미군은 상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6-3. 청각 경고. 다음의 청각경보는 (RK) P-518 한국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항공기를 철수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경고방송은 위급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비상주파수 및 주요 비행추적 주파수로 계속 반복 전송된다.

가. "HOT DOG."

(1) 비행금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실제로 침범하거나 긴박한 침범 위험에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HOT DOG" 소환을 실시한다. HOT DOG 절차는 시간과 장비가 허락한다면 기상요원 또는 비행 중인 요원에 의해서도 발령될 수 있다. 이 소환 방송은 항공기가 기수를 남쪽으로 선회할 때 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반복 실시한다.

(2) HOT DOG 경보 발령시에 매 30초 간격으로 "HOT DOG"란 음어에 이어 해당 비행금지구역 번호와 기수방향이 긴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송된다.(예문 항공기 호출부호 미확인시 : HOT DOG, HOT DOG, HOT DOG, THIS IS (발령기구/중계항공기 호출부호) ALL AIRCRAFT ON THE BUFFER ZONE / NO FLY AREA(I~VI), TURN TO HEADING (150-170) IMMEDIATELY, ACKNOWLEDGE.", 항공기 호출부호 확인시 : FOR(월경항공기 호출부호 2회) THIS IS (발령기구/중계항공기 호출부호) HOT DOG, HOT DOG, HOT DOG, TURN TO HEADING (150-170) IMMEDIATELY, ACKNOWLEDGE."

(3) HOT DOG 경보발령시 MCRC는 UHF와 VHF, 그리고 가능하면 주요 FM비행 유도주파수를 포함한 비상주파수를 사용하여 HOT DOG 소환을 발령한다. 채공중인 항공기 또는 비행작전본부(FOC) 및 비행협조소(FCC)에 HOT DOG 호출을 중계 시킬 수 있다.

(4) HOT DOG 소환방송을 청취한 조종사는, 즉시 항공기 기수를 150-170도로 선회, 유지하고 지형지물, 탑재항법시스템, 항법보조장비, 레이더조연 등 모든 가용방법을 이용하여 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수는 비행금지구역/비행금지선을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남동쪽으로 유지하며, 조종사는 통제부서의 소환이 타 항공기에 지시된 것임을 확인하거나 HOT DOG 방송을 종료할 때 까지 기수를 남동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5) 담당기관이 비상 발령을 종료시킬 때는 "HOT DOG TERMINATED"라는 음어가 방송되며 직통선 통신으로 항공교통 통제기관, 비행장 또는 지상과 교신을 유지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통하여 전파된다. 만약 HOT DOG 경보가 비행금지구역에서 이탈전에 종결되면, 정조종사는 자기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역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나. "JACK RABBIT."

(1) JACK RABBIT는 비무장지대(DMZ) 공역위반 상황 또는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외에 비상상황시 비행금지구역 및 (RK) P-518 한국전술지대 공역으로부터 모든 항공기를 이탈시킬 목적으로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나 그의 권한 위임자가 절차 시행을 지시한다.

(2) MCRC는 FOC-K(Guardian Control), 각 군 FOC, 전 한국군 및 주한미군 지휘소, 비행부대 작전과로 통보한다. MCRC와 FOC-K(Guardian Control)는 UHF, VHF, FM의 모든 주요 주파수와 비상주파수를 통하여 "JACK RABBIT" 음어를 반복해서 방송한다. FOC-K(Guardian Control) 또는 각 군 FOC는 각 FCC에 중계를 권고한다. 이 발령은 전술전투기 또는 헬리콥터 요격이 필요한 비상상황을 위해 설정되며, (RK)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전 항공기를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비상 철수 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 또는 개별적인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분명히 "HOT DOG" 절차와는 다르며 상호 혼동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발령 예문은 아래와 같다.

(예문 : "JACK RABBIT, JACK RABBIT, JACK RABBIT THIS IS (발령기구/중계항공기 호출부호) ON GUARD. ALL AIRCRAFT EVACUATE P-518 IMMEDIATELY. AUTHENTICATION TIME(OO) AUTHENTICATION IS (AKAC 1553에 의거한 2개 문자)").

(3) JACK RABBIT 방송을 수신한 경우,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의 모든 항공기는(요격 작전에 실제 관련된 항공기는 제외) 가장 가까운 항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RK) P-518 한국전술지대를 이탈한다.

만약 항공기의 소속기지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고, (RK) P-518 한국전술지대를 이탈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귀환할 수 있는 경우 소속기지로 귀환한다. 항공기 소속기지가 (RK) P-518 한국전술지대 내에 있으나, 항공기가 모기지 남쪽에 위치한 경우, 항공기는 JACK RABBIT 종료시까지 모기지인 북쪽으로 비행해서는 안된다.

(4) JACK RABBIT는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나 그의 권한 위임자의 지시하에 중앙방공통제소가 종료시키며 항공교통관제 및 지휘체계를 통하여 관련 부대(서)에 통보한다.

본 규정의 발기인은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보좌관실임. 변경요구사항 및 발전방안을 제기하고자 하는 제의는 양식 DA Form 2028(변경 건의양식)을 사용하여 수신: 한미연합사 사령관, 참조: 연합사 항공처, 부대번호 15255, 군우 96205-0010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을 대리하여:

주무관:

CHARLES C. CAMPBELL

미육군 중장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참모장



이 종선

한국육군 중령

유엔사/연합사 부관처장

F.W. MORRIS

에프 더블유 모리스

출판 및 기록 관리처장

전자매체에 한함: (EMO).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부록 가

참고문헌

합참예규('04. 1. 1) 부록 F(공군작전) 별지#8(전구항공통제체제) 부침#1(공역통제 및 항공교통관제) 별침#2(특수공역관리 및 통제)

공군 구성군사 규정 55-3('01. 2. 1) : 한국 공중작전 식별 및 IFF/SIF 절차

공군 구성군사 규정 55-20('03. 10. 1) : 한국 전구항공통제 및 운영절차

공군 구성군사 규정 60-8('01. 12. 1) : 한국완충지대/한국전술지대 비행작전 및
부주의로 인한 비우방국 국경 월경방지 절차

유엔사/연합사 지침서 525-4('96. 4. 29) : 정전시 교전규칙 (한미 II 급)

육군 비행정보 간행물('04. 12. 1): 비행장 및 헬리포트 접근절차

미 국방성 비행정보간행물(FLIP) (태평양) ('05. 5. 12)

육군규정 351('05. 1. 1) : 육군항공 운영 규정

육군규정 354('05. 1. 1) : 항공안전 규정

JP 1-02('05. 5. 9) : 미국방성 군사관련 용어집

미 육군규정 95-1('97. 9. 1) : 비행규정

미 8군 규정 95-1('03. 10. 10) : 미 8군 일반조항, 비행규정 및 훈련지침

미 육군 규정 15-6(96. 9. 30) : 조사장교 및 절차

유엔사 규정 551-4('03. 12. 1) : 휴전협정 준수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14('03. 11. 25) : 비행정보 및 비행추적업무(저고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6('84. 4. 4) : 간접사격, 낙하 및 무인항공기 비행시 공역관리

부록 나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구분

나-1. S구역

위치

- 가. H-104
- 나. G-107
- 다. C-182(“유엔 패드”)
- 라. 비행금지선 공중회랑2-12

- 좌표 BG74118048
- 좌표 BG84887706
- 좌표 BG74018158
- 참조 부록 “라”

나-2. T구역

위치

- 가. 스탠튼 기지 CG10308510
- 나. G-222 CG23288900
- 다. G-219 계곡 연못 CG 240983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교차로 CH255059 지점까지
- 라. 219 연장선 교차로 CH255059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다리 CH292086 지점까지
- 마. 스코트 통로 교차로 CG209973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비행금지선과 수직으로 있는 교차로 CH178030 지점까지
- 바. 북쪽 통로 교차로 CG180918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교차로 CG129911지점까지
- 사. 동쪽 통로 교차로 CG196875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교차로 CG132858지점까지
- 아. 남쪽 통로 연못 CG199831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교차로 CG131834 지점까지
- 자. 서쪽 항로 참조 미 국방성 FLIP
- 차. 적색 항로 참조 미 국방성 FLIP
- 카. 비행금지선 공중회랑 12-32 참조 부록 “라”

나-3. V구역

위치

- 가. 다용도 사격장
- 나. 모빌 기지
- 다. 나이트메어 사격장
- 라. 포천 소음 감소지역
- 마. 철원계곡
- 바. G-219
- 사. G-231
- 아. 황색 항로
- 자. 녹색 항로
- 차. 비행금지선 공중회랑 32-56
- 카. MPCP 항로

- CG43431064
- CG29109870
- CH55661506
- CG41799573
- CH46792573
- CG24909760
- CH56601000
- 참조 미 국방성 FLIP
- 참조 미 국방성 FLIP
- 참조 부록 “라”
- 참조 미 국방성 FLIP

나-4. W구역

위치

- 가. G-313

- CH84802010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 | |
|---------------------|---------------|
| 나. G-314 | CH89702200 |
| 다. G-317 | CH82403060 |
| 라. 주황색 향로 | 참조 미 국방성 FLIP |
| 마. 녹색 향로 | 참조 미 국방성 FLIP |
| 바. 비행금지선 공중회랑 56-64 | 참조 부록 “라” |

나-5. X구역

위치

| | |
|---------------------|------------|
| 가. G-404 | DH11101600 |
| 나. G-406 | DH13202170 |
| 다. 비행금지선 공중회랑 64-84 | 참조 부록 “라” |

나-6. Y구역

위치

| | |
|---------------------|------------|
| 가. G-413 | DH52704840 |
| 나. G-414 | DH29871783 |
| 다. 동쪽 향로 | 미 국방성 FLIP |
| 라. 비행금지선 공중회랑 84-92 | 참조 부록 “라” |
| 마. P-423 | DH65102240 |

부록 다

비행금지구역 및 회랑지역 구분

다-1. 비행금지선 (No Fly Line). 비행금지선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선이다. 비행금지선 북쪽(비행금지구역 안)에서의 비행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비행금지선은 인공지물(도로 등) 및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형지물(강, 계곡, 산등성이 등)을 최대한 따라서 비행한다.

ㄱ. SIERRA 구역

비행금지선은 서쪽 BG52006700지점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자북 35도 방향으로 BG55007100(△추문도)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추문도 북쪽 기슭을 따라 BG58007082지점으로 이어지며, 자북 010도 방향으로 송모도 위 BG59307720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송모도 서쪽 및 북쪽 기슭을 따라 BG60637725 (△“V” 댐)지점을 통과하여 BG63718173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자북 064도 방향으로 강화도 BG67298339(△입구)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동쪽으로 301번 간선도로를 따라 BG71218493지점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48번 간선도로를 따라 BG74738335(△청색 지붕 아파트)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동쪽으로 48번 간선도로를 따라 강화시를 통과하여 BG81467937(대교 서쪽 끝)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48번 간선도로를 따라 염하를 횡단한다(북쪽대교).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48번 간선도로를 따라 교차로 BG84507704(N-225/G-107 인근)지점으로 이어진다. 이 교차로부터 비행금지선은 북북동쪽 방향으로 56번 간선도로를 따라 “Y”자 교차로 BG86107847(△낙농장 인근, BG86107835)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Y”자 교차로의 왼쪽 길을 따라 BG86817913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동쪽으로 시냇물/관개수로를 따라 BG88407824지점으로 이어지며, 56번 간선도로를 따라 △청색/주황색 지붕 (BG88617806)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동쪽으로 56번 간선도로를 따라 △남녀학교(BG91357748)지점으로 이어지며, 동북동쪽 방향으로 56번 간선도로를 따라 BG92947796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후 비행금지선은 자북 039도 방향으로 △청색 빌딩 (BG93727879) - △세번째 높은 경계초소 (BG94597991)지점으로 이어지며, 자북 046도 방향으로 Tango 구역 △고속도로 대교 (BG96248141)지점으로 이어진다.

ㄴ. TANGO 구역

△고속도로 대교(BG96248141)지점으로부터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23 번 간선도로를 따라 BG96218242 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후 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BG97248264 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BG97938227 - BG97248264 - BG99028236 - △“두 손가락” 교차로(BG99548295)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310 번 간선도로를 따라 △장화고지(BG98548541)동쪽 지점을 지난다. 16A 번 회랑에서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오일뱅크(CG00838885)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310 번 간선도로를 따라, △굴뚝 (CG01559088)지점 남쪽으로 이어진다. CG02319069 지점에서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이어지며, 23 번 간선도로를 교차한 후, 23 번 간선도로를 따라 북북동쪽 그리고 북서쪽 방향으로 이어진다. G02459351 지점에서, 비행금지선은 23 번 간선도로를 벗어나 △N/S 경계초소(CG01079456)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후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임진강 서쪽 기슭을 따라 CG00489614 지점에서 자유대교를 교차할 때까지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북서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500m 동안 이어지며 그 다음 북동쪽 방향으로 C-123 이전의 도로를 따라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이어지며, 캠프 그리브스 북쪽을 지나서 CG00769728 지점으로 이어지며, T15 (CG00929741)지점을 지나서, 통일대교 북단 끝(CG01439769)까지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임진강 북쪽 기슭을 따라 22 번 회랑 동쪽 CG08349765 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대교를 지나 동쪽으로 이어지며 북북동쪽 방향으로 ‘신설’ 37 번 간선도로(강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를 따라 이어진다. CH10000023 지점으로부터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시냇물을 따라 CH11670035 지점에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37번 간선도로를 교차할 때까지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37번 간선도로를 따라 이어지며 △양어장(CH12850098)북쪽을 지나 CH17820306 지점으로, 그 다음 북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이어지며, CH17450688 지점에서 임진강을 횡단한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임진강 북쪽 강변 도로를 따라 CH20890763 지점으로 이어지며, 임진강 북쪽 강변을 따라 CH22821056 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322번 간선도로를 따라 CH26241404(남쪽 대교 위)지점으로 이어진다.

ㄷ. VICTOR 구역

CH26241404 지점으로부터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324번(78번) 간선도로를 따라 △고 학교(CH26091668)지점 동쪽을 지나 CH30962247 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후 비행금지선은 △4층 적색 벽돌 빌딩(CH31202278)지점 남쪽을 지나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시가지를 지나서 CH31872270 지점에서 철도에 교차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철도를 따라 CH37063101 지점으로 이어지며, 동북동쪽 방향으로 골짜기 및 비포장 도로를 따라 CH39073134 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북북동쪽 방향으로 CH397933285 지점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 400m 이어진 후, △테니스장(CH40103276)지점 북쪽을 지나서,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울지리 모퉁이(CH41573442)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남동쪽 방향으로 CH43603330 지점으로 이어지며, 북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CH4360486 지점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 동쪽 방향으로 464번 간선도로를 따라 △초원 관측소(CH46403442)지점 북쪽을 지나 CH49763590 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남쪽으로 도로를 따라 △소형 다리(CH50053473)지점으로 이어지며, 남동쪽 방향으로 비포장 도로를 따라 CH51693380 지점으로, 그 다음 동쪽 방향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CH53383369 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산등성이를 횡단한 후 동쪽 방향으로 골짜기 및 비포장 도로를 따라 CH55453378 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시냇물을 따라 CH55663461 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G-240(CH58093467)지점 북쪽을 지나서 CH61643467 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남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올림픽 볼링장(CH63403364)인근인 CH63493370 지점으로 이어진다.

ㄹ. WHISKEY 구역

CH63493370(△올림픽 볼링장 인근(CH63403364))지점으로부터,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CH66143512지점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 남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하워드 존슨" 호텔(CH 6639 3283)인근 CH66273278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남동쪽 방향으로 도로 및 계곡을 따라 △띠 모양 교차점(CH70442898)에서 고지를 횡단한다. 남쪽 방향으로 CH71512626지점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청색지붕(CH71692634)지점 남쪽으로 이어진다. 도로는 북동쪽 방향으로 △고립된 나무(CH75462622)지점 인근으로 이어지며, CH76662822지점에서 비행금지선은 도로를 떠나 북동쪽 방향으로 작은 산등성이로 이어진다. 산등성이를 내려와 도로 및 계곡을 횡단하여 북동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안부를 통과하여 △자갈 채취장(CH78402989)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CH79003054지점으로 이어지며,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CH82373058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남남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SK 가스(CH83282856)바로 북쪽인 지점인 CH83202862지점으로 이어진다.

ㅁ. X-RAY 구역

△SK 가스(CH83282856)바로 북쪽에 있는 CH83202862지점에서, 비행금지선은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 및 계곡을 따라 CH85012940(계곡 내 기로)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남쪽 기로를 따라 지형이 올라 가는 대로 CH86722890 - CH87222853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도로 및 계곡을 따라 CH88652864지점으로 이어지며, 동남동쪽 방향으로 가운데 기로를 따라 △산골짜기 좁은 길(CH89372830)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계곡을 횡단하며 CH92312745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서부 터널(CH 9279 2733)지점 북쪽에 있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동쪽 골짜기를 따라, CH93622765에서 산등성이를 교차한다.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동부 터널(CH 9479 2749)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산등성이를 따라 CH95372754 - CH96062738 - CH96782717 - CH97222693 - CH98132737지점으로 이어진다. 583고지를 횡단하며 산등성이를 따라 CH99202732지점으로 이어지며 (강을 건너) DH00212704(작은 입구)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첨탑(DH01652710)지점으로 이어진다. 동쪽 방향으로 작은 지맥을 따라 639고지를 건너 DH02672686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골짜기를 내려와 강의 말굽 굴곡(DH03242692)을 따라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강을 따라 DH04652702지점으로 이어지며; 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DH05802732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북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S"모퉁이(DH06502737)지점 서쪽을 지나서 DH088343175지점으로 이어진다. 도로 및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DH11623132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남남동쪽 방향으로 도로 및 계곡을 따라 △"T" 교차로 (DH13532721)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쌍둥이 첨탑(DH15352740)지점 남쪽을 지난다.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DH16253014(76번 회랑)지점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 동북동쪽 방향으로 DH18873223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머리핀 모퉁이(DH189533160)지점으로 이어진다. 동쪽 방향으로 도로(산등성이 바로 북쪽)를 따라 DH20783333지점으로 이어진다. 고지를 따라 DH21113319지점으로 이어지며, 북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80A번 회랑(DH22883456)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계곡 바닥을 따라 일직선으로 △80번 회랑(DH22883456)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후 북북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DH26923809지점으로 이어지며, 남동쪽 방향으로 선회하여 DH27513767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도로를 벗어나 안부를 통과하여 DH28093727지점으로 이어진다. 남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도로를 DH28693705지점에서 교차할 때까지 이어지며 도로를 따라 DH29163642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비행금지선은 DH29493556지점으로 이어지며,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작은 고지 교차로(DH31013501)지점 바로 북쪽의 DH30993526지점으로 이어진다.

비. YANKEE 구역

△작은 고지 교차로(DH31013501)지점에서, 비행금지선은 동쪽 방향으로 시냇물을 따라 DH32643583 지점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동쪽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가장 북쪽) DH34513609 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동북동쪽 방향으로 비포장 도로 및 계곡을 따라 △675 고지(DH37993758)지점 남쪽을 지나서 DH38323786 지점으로 이어진다. 동쪽으로 1,200 m 이어지며 북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1070 고지(DH39533856)지점 남쪽을 지나 DH40243900 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DH40243983 지점으로 이어지며, 산등성이를 횡단하며 DH40574017 지점으로 이어지며, 남동쪽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육군 헬리패드 (DH41014029)지점 남쪽을 지나서 △설악대교 (DH44293865)지점으로 이어진다. 비행금지선은 북쪽 방향으로 46 번 간선도로를 따라 △3 번 극초단파 타워(DH46554693)지점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DH53164999 지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비행금지선은 작은 시냇물/입구를 따라 해안선 DH54505070 지점으로 이어진다.

다-2. 비행금지구역 (NFA). P-518 한국전술지대 내의 구역으로, 북쪽경계선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경계선은 비행금지선이며 이 구역내의 비행은 제한되어있으며 출입은 1 군 및 3 군에서 통제한다. 항공기는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위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의 지휘 및 통제, 항법의 편의를 위하여 비행 회랑이 확립되어 있다. 비행 허가 및 비행 추적의 간편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비행금지구역은 6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구역은 아래와 같다:

가. 구역 1. 북쪽에서 남쪽으로 BG47007542 - BG500407076(P518 서쪽경계선)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BG52006700지점을 지나서 한강 중심상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BG94398335(중립지대) - BG95378064(비행금지선)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이어진다. 주의: 구역1 및 비행금지선의 일부부분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P518 남쪽경계선의 남쪽에 있다. 이 지역에서도 비행금지선 북쪽에서의 비행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구역 1은 2004 L754S 1:50,000 P518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021-III, 3021-IV, 3021-I, 3021-II, 3121-III, 3121-IV.)

ㄴ. **구역 2.** 구역 1의 동쪽경계선으로부터,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CH21312022(남방철책선)에서 시작하여 임진강 북쪽 및 동쪽 기슭을 따라 남쪽으로 CH25771485 지점으로, 36번 회랑의 동쪽경계선을 따라 CH26191431(비행금지선)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구역 2는 2004 L754S 1:50,000 P518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121-IV, 3122-II, 3121-I.)

ㄷ. **구역 3.** 구역 2의 동쪽경계선으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CH64564016(남방철책선)에서 시작하여 CH64773962 - CH64303900(56번 회랑의 북서쪽 끝) - CH64403870(56번 회랑의 서쪽면) - CH64013750 - CH64163626 - CH63843531(비포장 도로 위) - CH63443443 - CH63503367(비행금지선)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구역 3은 2004 L754S 1:50,000 P518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122-I, 3122-II, 3222-III, 3222-IV.)

ㄹ. **구역 4.** 구역 3의 동쪽경계선으로부터,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CH83464160(남방철책선)에서 시작하여, CH83284120 - CH82654092 - CH82724004 - CH82803921 - CH83303892 - CH83563820 - CH83403730(64번 회랑의 동쪽면) - CH83503470 - CH84403162 - CH83232860(비행금지선)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구역 4는 2004 L754S 1:50,000 P518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222-I, 3222-II, 3222-III, 3222-IV.)

ㅁ. **구역 5.** 구역 4의 동쪽경계선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DH30604539(남방철책선)에서 시작하여, DH30584485(84번 회랑 동쪽 길 위) - DH30734437 - DH30504305 - DH30594200 - DH31133967 - DH30953690 - DH30683642 - DH30593585 - DH31003527(비행금지선)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구역 5는 2004 L754S 1:50,000 P518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222-I, 3222-II, 3322-III, 3322-IV, 3322-I, 3322-II.)

ㅂ. **구역 6.** 구역 5의 동쪽경계선에서, 동쪽으로 P518 동쪽경계선(해안선)까지 이다. 구역 6은 2004 L754S 1:50,000 P518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322-I, 3322-II, 3422-IV, 3423-III.)

다-3. 회랑. 회랑의 각 정점은 아래의 표에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금지선에 인접하는 회랑에 대해서는 표에 첫번째로 기술된 정점이 회랑의 가장 남서쪽 정점이다. 그 다음으로 기술된 정점들은 남서쪽 정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갔을 때 있는 정점이며 비행금지선에서 종료된다.

비행금지선에 인접하지 않는 회랑에 대해서는 표에 첫번째로 기술된 정점이 회랑의 가장 서쪽 또는 남쪽 정점이다. 그 다음으로 기술된 정점들은 서쪽 또는 남쪽 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갔을 때 있는 정점이며 시작점에서 종료된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표 1

| | 2 | 2A | 4 | 8 |
|----|--------------|--------------|--------------|--------------|
| 1 | BG 6299 8132 | BG 6171 8280 | BG 7075 8460 | BG 8132 7946 |
| 2 | BG 6171 8280 | BG 5660 7870 | BG 7054 8472 | BG 8181 8051 |
| 3 | BG 6101 8351 | BG 5330 7300 | BG 7169 8626 | BG 8182 8169 |
| 4 | BG 5830 8680 | BG 5240 7362 | BG 7057 8743 | BG 8280 8168 |
| 5 | BG 5910 8731 | BG 5600 7961 | BG 7133 8798 | BG 8280 8009 |
| 6 | BG 6379 8182 | BG 6101 8351 | BG 7225 8712 | BG 8222 7879 |
| 7 | | BG 6171 8280 | BG 7287 8798 | |
| 8 | | | BG 7338 8842 | |
| 9 | | | BG 7397 8757 | |
| 10 | | | BG 7174 8426 | |

표 2

| | 10 | 12 | 16 | 16A |
|---|--------------|--------------|--------------|--------------|
| 1 | BG 8418 7707 | BG 9623 8245 | BG 9916 8652 | BG 9780 8800 |
| 2 | BG 8429 8121 | BG 9541 8341 | BG 9729 8641 | BG 9670 8801 |
| 3 | BG 8530 8121 | BG 9631 8400 | BG 9719 8749 | BG 9670 8900 |
| 4 | BG 8522 7819 | BG 9773 8238 | BG 9775 8772 | BG 9880 8901 |
| 5 | | | BG 9780 8800 | BG 9882 8762 |
| 6 | | | BG 9840 8800 | BG 9840 8800 |
| 7 | | | BG 9882 8762 | BG 9780 8800 |

표 3

| | 20 | 20A | 20B | 22 |
|----|--------------|--------------|--------------|----------------------|
| 1 | CG 0041 9572 | BH 9939 0065 | CH 0083 0118 | CG 0171 9793 |
| 2 | BG 9934 9621 | BH 9650 0199 | CH 0360 0210 | CG 0168 9839 |
| 3 | CG 0060 9830 | BH 9541 0280 | CH 0409 0320 | CG 0150 9860 |
| 4 | BH 9990 0041 | BH 9601 0371 | CH 0480 0251 | CG 0175 9860 |
| 5 | BH 9939 0065 | BH 9702 0280 | CH 0451 0139 | CG 0241 9971 |
| 6 | BH 9650 0199 | CH 0004 0151 | CH 0224 0050 | CG 0641 9970 |
| 7 | BH 9541 0280 | BH 9997 0122 | CH 0083 0118 | CG 0704 9943 |
| 8 | | | | 남동쪽 및 남쪽 방향으로 도로를 |
| 9 | BH 9601 0371 | BH 9971 0102 | | 따라 |
| | CH 0083 0118 | BH 9939 0065 | | 비행금지선으로 |
| 10 | CH 0224 0050 | | | CG 0834 9765 |
| 11 | CG 0150 9860 | | | |
| 12 | CG 0168 9839 | | | |
| 13 | CG 0171 9793 | | |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표 4

| | 24 | 24A | 24B | 26 |
|---|--------------|--------------|--------------|--------------|
| 1 | CG 0965 9940 | CH 0881 0140 | CH 0901 0260 | CH 1681 0248 |
| 2 | CH 0881 0040 | CH 0780 0230 | CH 0930 0540 | CH 1560 0370 |
| 3 | CH 0881 0140 | CH 0851 0299 | CH 1037 0527 | CH 1040 0430 |
| 4 | CH 0901 0260 | CH 0901 0260 | CH 1040 0430 | CH 1037 0527 |
| 5 | CH 0991 0259 | CH 0881 0140 | CH 0991 0259 | CH 1620 0460 |
| 6 | CH 0978 0110 | | CH 0901 0260 | CH 1767 0302 |
| 7 | CH 1022 0045 | | | |

표 5

| | 28 | 28A | 28B | 28TC |
|----|--------------|--------------|--------------|--------------|
| 1 | CH 1705 0595 | CH 1439 0811 | CH 1439 0811 | CH 1543 0851 |
| 2 | CH 1481 0760 | CH 1380 0661 | CH 1330 0823 | CH 1620 0900 |
| 3 | CH 1439 0811 | CH 1230 0721 | CH 1270 0899 | CH 1632 1170 |
| 4 | CH 1521 0895 | CH 1250 0810 | CH 1351 0943 | CH 1732 1199 |
| 5 | CH 1543 0851 | CH 1320 0789 | CH 1380 0900 | CH 1852 1251 |
| 6 | CH 1631 0771 | CH 1330 0823 | CH 1521 0895 | CH 1850 1393 |
| 7 | CH 1745 0689 | CH 1439 0811 | CH 1330 0823 | CH 2013 1509 |
| 8 | | | CH 1439 0811 | CH 2079 1446 |
| 9 | | | | CH 1949 1344 |
| 10 | | | | CH 1951 1187 |
| 11 | | | | CH 1732 1086 |
| 12 | | | | CH 1724 0849 |
| 13 | | | | CH 1631 0771 |
| 14 | | | | CH 1543 0851 |

표 6

| | 28C | 32 | 28TC | 36 |
|----|--------------|--------------|--------------|--------------|
| 1 | CH 1632 1170 | CH 2255 1054 | CH 2082 1592 | CH 2550 1350 |
| 2 | CH 1551 1251 | CH 2150 1220 | CH 2384 2002 | CH 2278 1678 |
| 3 | CH 1480 1300 | CH 2171 1360 | CH 2427 2209 | CH 2341 1771 |
| 4 | CH 1561 1361 | CH 2079 1446 | CH 2469 2204 | CH 2619 1431 |
| 5 | CH 1651 1302 | CH 2013 1509 | CH 2434 1869 | |
| 6 | CH 1732 1199 | CH 1991 1528 | CH 2341 1771 | |
| 7 | CH 1632 1170 | CH 1920 1860 | CH 2278 1678 | |
| 8 | | CH 2010 1881 | CH 2151 1530 | |
| 9 | | CH 2082 1592 | CH 2082 1592 | |
| 10 | | CH 2151 1530 | | |
| 11 | | CH 2272 1391 | | |
| 12 | | CH 2261 1240 | | |
| 13 | | CH 2357 1079 | |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표 7

| | 37 | 37A | 37B | 37TC |
|----|--------------|--------------|--------------|--------------|
| 1 | CH 2894 2058 | CH 2758 2170 | CH 2711 2369 | CH 2711 2369 |
| 2 | CH 2758 2170 | CH 2469 2204 | CH 2550 2471 | CH 2783 2448 |
| 3 | CH 2768 2270 | CH 2427 2209 | CH 2472 2640 | CH 2881 2450 |
| 4 | CH 2820 2270 | CH 2436 2315 | CH 2560 2701 | CH 2880 2554 |
| 5 | CH 2949 2140 | CH 2650 2292 | CH 2639 2540 | CH 2923 2659 |
| 6 | | CH 2711 2369 | CH 2783 2448 | CH 3019 2661 |
| 7 | | CH 2768 2270 | CH 2711 2369 | CH 3010 2600 |
| 8 | | CH 2758 2170 | | CH 2975 2472 |
| 9 | | | | CH 2790 2323 |
| 10 | | | | CH 2768 2270 |
| 11 | | | | CH 2711 2369 |

표 8

| | 38 | 38A | 38TC | 38B |
|----|--------------|--------------|--------------|--------------|
| 1 | CH 3390 2652 | CH 2923 2659 | CH 3241 2790 | CH 3272 3037 |
| 2 | CH 3270 2689 | CH 2840 2671 | CH 3272 3037 | CH 3029 3239 |
| 3 | CH 3019 2661 | CH 2720 2940 | CH 3251 3169 | CH 3081 3311 |
| 4 | CH 2923 2659 | CH 2800 3010 | CH 3352 3199 | CH 3251 3169 |
| 5 | CH 2949 2759 | CH 2911 2760 | CH 3722 3640 | CH 3272 3037 |
| 6 | CH 3241 2790 | CH 2949 2759 | CH 3821 3700 | |
| 7 | CH 3340 2770 | CH 2923 2659 | CH 3882 3700 | |
| 8 | CH 3416 2740 | | CH 3880 3601 | |
| 9 | | | CH 3821 3599 | |
| 10 | | | CH 3371 3047 | |
| 11 | | | CH 3360 2850 | |
| 12 | | | CH 3340 2770 | |
| 13 | | | CH 3241 2790 | |

표 9

| | 38C | 42 | 42A | 42B |
|----|--------------|--------------|--------------|--------------|
| 1 | CH 3251 3169 | CH 3676 3074 | CH 3722 3640 | CH 3882 3700 |
| 2 | CH 3250 3400 | CH 3690 3200 | CH 3671 3690 | CH 4000 3828 |
| 3 | CH 3480 3500 | CH 3901 3470 | CH 3730 3760 | CH 4120 3841 |
| 4 | CH 3510 3420 | CH 3880 3601 | CH 3821 3700 | CH 4120 3809 |
| 5 | CH 3350 3340 | CH 3882 3700 | CH 3722 3640 | CH 3990 3668 |
| 6 | CH 3352 3199 | CH 3990 3668 | | CH 3882 3700 |
| 7 | CH 3251 3169 | CH 3990 3581 | | |
| 8 | | CH 4033 3481 | | |
| 9 | | CH 3780 3160 | | |
| 10 | | CH 3776 3118 | |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표 10

| | 46A | 46 | 46B | 46C |
|----|--------------|--------------|--------------|--------------|
| 1 | CH 3990 3581 | CH 4278 3358 | CH 4220 3600 | CH 4284 3681 |
| 2 | CH 4220 3600 | CH 4280 3440 | CH 4181 3799 | CH 4470 3910 |
| 3 | CH 4231 3491 | CH 4259 3441 | CH 4449 4061 | CH 4620 4011 |
| 4 | CH 4033 3481 | CH 4231 3491 | CH 4520 4010 | CH 4652 3910 |
| 5 | CH 3990 3581 | CH 4220 3600 | CH 4261 3760 | CH 4530 3840 |
| 6 | | CH 4284 3681 | CH 4284 3681 | CH 4349 3604 |
| 7 | | CH 4349 3604 | CH 4220 3600 | CH 4284 3681 |
| 8 | | CH 4292 3531 | | |
| 9 | | CH 4380 3541 | | |
| 10 | | CH 4381 3491 | | |

표 11

| | 48A | 48 | 52A | 52 |
|---|--------------|--------------|--------------|--------------|
| 1 | CH 4620 4011 | CH 4943 3578 | CH 5136 3848 | CH 5432 3364 |
| 2 | CH 4880 4049 | CH 4851 3681 | CH 5482 3798 | CH 5461 3481 |
| 3 | CH 4900 3950 | CH 4967 3700 | CH 5471 3698 | CH 5471 3698 |
| 4 | CH 4967 3700 | CH 5136 3848 | CH 5192 3748 | CH 5482 3798 |
| 5 | CH 4851 3681 | CH 5192 3748 | CH 5136 3848 | CH 5635 3900 |
| 6 | CH 4803 3912 | CH 4995 3576 | | CH 5701 3830 |
| 7 | CH 4652 3910 | | | CH 5673 3651 |
| 8 | CH 4620 4011 | | | CH 5667 3546 |
| 9 | | | | CH 5660 3474 |

표 12

| | 52B | 52C | 52D | 56 |
|---|--------------|--------------|--------------|--------------|
| 1 | CH 5482 3798 | CH 5635 3900 | CH 5673 3651 | CH 6444 3479 |
| 2 | CH 5521 3879 | CH 5818 3971 | CH 5768 3637 | CH 6401 3750 |
| 3 | CH 5550 4027 | CH 5843 3884 | CH 5768 3540 | CH 6440 3870 |
| 4 | CH 5604 4004 | CH 5701 3830 | CH 5667 3546 | CH 6430 3900 |
| 5 | CH 5635 3900 | CH 5635 3900 | CH 5673 3651 | CH 6530 3921 |
| 6 | CH 5482 3798 | | | CH 6540 3870 |
| 7 | | | | CH 6525 3801 |
| 8 | | | | CH 6520 3688 |
| 9 | | | | CH 6547 3515 |

표 13

| | 56A | 60 | 60A | 62 |
|----|--------------|--------------|--------------|--------------|
| 1 | CH 6525 3801 | CH 7070 2830 | CH 7187 3773 | CH 7689 2842 |
| 2 | CH 6741 3811 | CH 7081 3001 | CH 7529 3718 | CH 7560 3498 |
| 3 | CH 6860 3761 | CH 7151 3081 | CH 7518 3609 | CH 7518 3609 |
| 4 | CH 7046 3767 | CH 7189 3251 | CH 7180 3668 | CH 7529 3718 |
| 5 | CH 7073 3657 | CH 7131 3381 | CH 7187 3773 | CH 7670 3630 |
| 6 | CH 6830 3659 | CH 7140 3481 | | CH 7660 3486 |
| 7 | CH 6730 3710 | CH 7073 3657 | | CH 7680 3369 |
| 8 | CH 6520 3688 | CH 7046 3767 | | CH 7780 2914 |
| 9 | CH 6525 3801 | CH 7187 3773 | | |
| 10 | | CH 7180 3668 | | |
| 11 | | CH 7240 3480 | | |
| 12 | | CH 7233 3411 | | |
| 13 | | CH 7302 3266 | | |
| 14 | | CH 7250 3040 | | |
| 15 | | CH 7180 2970 | | |
| 16 | | CH 7180 2626 | | |

표 14

| | 64A | 64 | 66A | 66 |
|----|--------------|--------------|--------------|--------------|
| 1 | CH 8177 3050 | CH 8302 3009 | CH 8451 3741 | CH 9130 2775 |
| 2 | CH 7870 3311 | CH 8279 3091 | CH 8870 3750 | CH 9361 3380 |
| 3 | CH 7680 3369 | CH 8330 3170 | CH 9020 3570 | CH 9340 3430 |
| 4 | CH 7660 3486 | CH 8250 3441 | CH 9481 3520 | CH 9481 3520 |
| 5 | CH 7941 3392 | CH 8240 3840 | CH 9340 3430 | CH 9541 3370 |
| 6 | CH 8279 3091 | CH 8191 3980 | CH 8970 3478 | CH 9462 3359 |
| 7 | CH 8302 3009 | CH 8290 4020 | CH 8831 3651 | CH 9232 2746 |
| 8 | | CH 8451 3741 | CH 8381 3641 | |
| 9 | | CH 8340 3731 | CH 8340 3731 | |
| 10 | | CH 8350 3470 | CH 8451 3741 | |
| 11 | | CH 8440 3162 | | |
| 12 | | CH 8315 2867 | | |

표 15

| | 68A | 68 | 68B | 72 |
|----|--------------|--------------|--------------|--------------|
| 1 | CH 9481 3520 | CH 9920 2732 | CH 9952 3020 | DH 1026 3147 |
| 2 | CH 9541 3610 | CH 9820 2850 | DH 0131 3211 | DH 1041 3190 |
| 3 | CH 9540 3680 | CH 9870 2941 | DH 0270 3491 | DH 0960 3290 |
| 4 | CH 9651 3670 | CH 9952 3020 | DH 0347 3436 | DH 0960 3381 |
| 5 | CH 9651 3570 | DH 0029 2959 | DH 0221 3156 | DH 1029 3460 |
| 6 | CH 9590 3465 | CH 9955 2878 | DH 0029 2959 | DH 1132 3360 |
| 7 | CH 9659 3371 | CH 9940 2850 | CH 9952 3020 | DH 1070 3310 |
| 8 | CH 9820 3370 | DH 0077 2701 | | DH 1159 3208 |
| 9 | CH 9810 3180 | | | DH 1122 3137 |
| 10 | CH 9871 3041 | | | |
| 11 | CH 9952 3020 | | | |
| 12 | CH 9870 2941 | | | |
| 13 | CH 9801 2961 | | | |
| 14 | CH 9710 3160 | | | |
| 15 | CH 9710 3270 | | | |
| 16 | CH 9610 3270 | | | |
| 17 | CH 9541 3370 | | | |
| 18 | CH 9481 3520 | | | |

표 16

| | 72A | 72B | 72C | 76 |
|----|--------------|--------------|--------------|--------------|
| 1 | DH 0960 3381 | DH 1029 3460 | DH 1172 3688 | DH 1626 2852 |
| 2 | DH 0850 3490 | DH 1050 3590 | DH 1340 3701 | DH 1550 3160 |
| 3 | DH 0791 3611 | DH 1090 3640 | DH 1430 3800 | DH 1580 3470 |
| 4 | DH 0710 3640 | DH 1041 3710 | DH 1490 3731 | DH 1540 3590 |
| 5 | DH 0581 3811 | DH 1130 3759 | DH 1380 3600 | DH 1575 3737 |
| 6 | DH 0640 3841 | DH 1172 3688 | DH 1192 3590 | DH 1681 3704 |
| 7 | DH 0690 3840 | DH 1192 3590 | DH 1172 3688 | DH 1650 3580 |
| 8 | DH 0770 3721 | DH 1139 3550 | | DH 1680 3480 |
| 9 | DH 0870 3679 | DH 1132 3360 | | DH 1650 3170 |
| 10 | DH 0940 3560 | DH 1029 3460 | | DH 1684 3024 |
| 11 | DH 1029 3460 | | | |
| 12 | DH 0960 3381 | | |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표 17

| | 78 | 80A | 80 | 84 |
|----|--------------|--------------|--------------|--------------|
| 1 | DH 2077 3332 | DH 2184 3339 | DH 2598 3701 | DH 2821 3717 |
| 2 | DH 1950 3600 | DH 2141 3430 | DH 2529 3768 | DH 2990 4070 |
| 3 | DH 1949 3751 | DH 2191 3511 | DH 2451 3849 | DH 2920 4230 |
| 4 | DH 2051 3751 | DH 2215 3573 | DH 2320 3990 | DH 2981 4400 |
| 5 | DH 2050 3620 | DH 2451 3849 | DH 2380 4070 | DH 3080 4390 |
| 6 | DH 2141 3430 | DH 2529 3768 | DH 2667 3784 | DH 3061 4341 |
| 7 | DH 2184 3339 | DH 2310 3541 | | DH 3032 4239 |
| 8 | | DH 2290 3460 | | DH 3031 4220 |
| 9 | | | | DH 3090 4061 |
| 10 | | | | DH 2896 3665 |

표 18

| | 84A | 84B | 88 | 90 |
|----|--------------|--------------|--------------|--------------|
| 1 | DH 3061 4341 | DH 3405 3593 | DH 4430 3972 | DH 5126 4800 |
| 2 | DH 3251 4251 | DH 3551 4151 | DH 4278 3989 | DH 4619 4880 |
| 3 | DH 3552 4248 | DH 3552 4248 | DH 4010 4220 | DH 4564 5011 |
| 4 | DH 3551 4151 | DH 3549 4530 | DH 3961 4361 | DH 4320 5071 |
| 5 | DH 3231 4149 | DH 3649 4531 | DH 4067 4379 | DH 4270 5131 |
| 6 | DH 3032 4239 | DH 3651 4150 | DH 4107 4273 | DH 4330 5231 |
| 7 | DH 3061 4341 | DH 3510 3590 | DH 4330 4080 | DH 4370 5171 |
| 8 | | | DH 4436 4070 | DH 4639 5100 |
| 9 | | | | DH 4690 4980 |
| 10 | | | | DH 5234 4874 |

표 19

| | 92 | 92A | 92B | 92C |
|----|--------------|--------------|--------------|--------------|
| 1 | DH 5372 5029 | DH 5160 5421 | DH 5080 5532 | DH 5183 5576 |
| 2 | DH 5160 5421 | DH 4831 5500 | DH 4920 5601 | DH 5210 5599 |
| 3 | DH 5080 5532 | DH 4671 5611 | DH 4921 5941 | DH 5057 5923 |
| 4 | DH 5183 5576 | DH 4571 5760 | DH 5014 6019 | DH 5014 6019 |
| 5 | DH 5240 5470 | DH 4670 5980 | DH 5057 5923 | DH 4821 6443 |
| 6 | DH 5450 5070 | DH 4661 6261 | DH 5020 5891 | DH 4767 6555 |
| 7 | | DH 4767 6555 | DH 5020 5660 | DH 4731 6640 |
| 8 | | DH 4821 6443 | DH 5183 5576 | DH 4721 6841 |
| 9 | | DH 4770 6261 | DH 5080 5532 | DH 4480 7120 |
| 10 | | DH 4770 5940 | | DH 4571 7181 |
| 11 | | DH 4691 5770 | | DH 4819 6881 |
| 12 | | DH 4740 5671 | | DH 4830 6690 |
| 13 | | DH 4861 5591 | | DH 5331 5589 |
| 14 | | DH 5080 5532 | | DH 5240 5470 |
| 15 | | DH 5160 5421 | | DH 5183 5576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약어집

1 절

축약어

| | | |
|---------|--|---------------------------|
| AAD | Army Aviation Department | 군항공과 |
| AAF | Army airfield | 육군 비행장 |
| ACC | Air Component Command | 공군구성군사령부 |
| ACofS | Assistant Chief of Staff | 부참모장 |
| AGL | Above Ground Level | 지상고도 |
| AIRAD | Airmen's Advisory | 항공정보 |
| AME | Airspace Management Element | 공역통제반 |
| ATC | Air Traffic Control | 항공관제 (통제) |
| CC | Command Center | 사령부 |
| CFC | Combined Forces Command | 연합사(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
| DMZ | Demilitarized Zone | 비무장지대 |
| DOD | Department of Defense | 국방성(미) |
| FCC | Flight Coordination Center | 비행협조소 |
| FLIP | Flight Information Publications | 비행정보간행물 |
| FM | Frequency Modulation | FM 무전기 |
| FOC | Flight Operations Center | 비행작전본부 |
| FROKA | First ROK Army | 한국육군 제 1군 |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 범세계 위치 체계 |
| HDTA | High Density Training Area | 고밀도 훈련지역 |
| HQ | Headquarters | 본부 |
| HRE | Han River Estuary | 한강하구(어귀) |
| IAW | in accordance with | ~ 에 따라서 |
| IP | Instructor Pilot | 교관조종사 |
| JSA | Joint Security Area | 공동경비구역 |
| MACHA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 군사정전위 본부지역 |
| MCRC | 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 | 중앙방공통제소 |
|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 군사분계선 |
| MEDEVAC | medical evacuation | 의무후송 |
| MSC | major subordinate command | 주요 예하사령부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 | | |
|-----------|---|----------------------------|
| NFL | No Fly Line | 비행금지선 |
| NLT | no later than | ~ 이내까지 |
| OPLAN | Operation Plan | 작전계획 |
| PIC | Pilot in Command | 정조종사 |
| POC | Point of contact | 담당자, 연락처 |
| RK | ICAO Country Identifier for South Korea | 국제 민간항공 기구 국가 식별 부호(한국) |
| ROK |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
| RMI | radio magnetic indicator | 무선방향지시계 |
| SIP | Standardization Instructor Pilot | 표준교관조종사 |
| TACAN | Tactical Air navigation | 전술항공비행 |
| TROKA | Third ROK Army | 한국육군 제 3군 |
| UHF | ultra high frequency | 극초단파 |
| UNC | United Nations Command | 유엔사 |
| UNCMAC |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
| UNCSF-JSA |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Force -Joint Security Area |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 |
| U.S. |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 |
| USFK | United States Forces, Korea | 주한미군 |
| UT | Unit Trainer | 부대교관 |
| VFR | visual flight rules | 시각비행 |

2절

용어해설

(RK) P-518 한국전술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BG498707, BG948768, CG123694, CH833039, DH569141, DH662260 연결한 북쪽지역으로서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하여 6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전술지대의 설치 목적은 군의 평시 작전의 자유성 확보와 북한군의 공중침투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우군기의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세부지역은 부록 다(P-518 한국전술지대 구분)에 기술되어 있다.

ㄱ. 섹터 시에라(S)의 남쪽 경계선은 한국의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여 BG498707의 동쪽으로 BG948768 지점까지 연장이고, 계속해서 동쪽 BG960762 지점까지 계속된다. 섹터 S 및 T의 경계선은 BG960762에서 시작하여 간선도로를 따라 북으로 BG963824 지점의 공중회랑 남서쪽까지 따라간다.

ㄴ. 섹터 탱고(T)는 섹터 S의 BG960762 동쪽 경계로 시작하여 동쪽에 있는 CG123694으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이어지고, 동쪽 CG280770까지 계속된다. 섹터 T와 V의 경계는 CH231105에 위치한 32 공중회랑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하고, 남쪽의 CH254060, CG260932로 이어지며, 남동쪽 CG247847에 있는 도로로 계속되어 남쪽 CG264797의 지형 및 CG280772로 따라간다.

ㄷ. 섹터 빅터(V)는 섹터 T의 동쪽 CG280770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CG466865 지점으로 계속된다. 섹터 V와 W의 경계는 CH650350에 위치한 56 공중회랑의 중앙으로부터 시작하고, 남쪽으로 CH634336, 남쪽을 따라 CH555063의 간선도로로, 남쪽 간선도로 CG466865로 따른다.

ㄹ. 섹터 위스키(W)는 섹터 VF의 CG466865의 동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CH833039로 이어진다. 섹터 W와 X의 경계는 CH830301에 위치한 64 공중회랑의 중앙으로부터 시작하여, CH867177의 간선도로로 남하하고 남쪽으로 CH833039에 있는 춘천호 동쪽 지역으로 계속된다.

ㄱ. 섹터 엑스-레이(X)는 섹터 W의 동쪽 CH833039에서 시작하여 동쪽 DH278100으로 이어진다. 섹터 X와 Y의 경계는 DH287370에 위치한 84 공중회랑의 중앙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양강 서쪽 강둑을 따라 남쪽 DH308352에서 DH296208에서 DH278100으로 이어진다.

ㅂ. 섹터 양키(Y)는 섹터 X의 동쪽에서 DH569141의 동쪽으로 시작하여 북동쪽 DH662260으로 계속된다. 섹터 Y의 경계는 DH662260에서부터 북쪽으로 동해안을 따라 DH543510 92 공중회랑까지 이어진다.

비행금지구역 비 우방국 국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군 항공기의 이 지역 비행시 권한자의 사전 허가하에 특별히 지정된 절차에 따라 비행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대략 군사분계선 남방 5NM(9.3km)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록 라(회랑지역 구분)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비행작전본부(FOC)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비행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육군의 항공교통 주 통제부서이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를 통제하는 비행작전본부(FOC)에는 1군지역을 통제하는 원주 비행작전본부(FOC), 3군 지역을 통제하는 용인 비행작전본부(FOC)가 있다. 주한미군은 성남에 위치한 FOC-K (Guardian Control)의 통제를 받는다.

비행협조소(FCC) 비행작전본부의 예하부서로서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실시간 항공관제 및 비행정보 제공을 주 임무로 하며, 원주 비행작전본부(FOC) 예하에 4개소(SUN, 동해, GRANT, LEE), 용인 비행작전본부(FOC) 예하에 3개소(봉황, 고니, 기러기)가 있다.

주한 미 육군은 FOC-K(Guardian Control) 예하에 NORTH RADIO와 SOUTH RADIO가 운용되고 있다. (RK) P-518 한국전술지대를 지상 600피트 이하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행협조소(FCC)와 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가된 비행회랑 조종사. 비행금지선 진입 및 비행회랑 내로 비행할 수 있도록 인가된 조종사.

비무장지대(DMZ). 1953년 군사정전협정의 1:5만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한강 하구에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해안에 이르는 폭 4,000m, 길이 약 150마일 가량의 구역이다.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및 북방 한계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 또는 북쪽으로 각각 약 2,000m이다.

FOC-K (Guardian Control). 지상고도 600피트 이하에서 운용되는 시각비행 항공기에 대한 대한민국 비행추적 기관이다. 가디언 콘트롤(Guardian Control)은 노스 레디오(North Radio), 사우스 레디오(South Radio)로 구성된다.

한강 하구(HRE). DMZ 서쪽 끝단으로부터 황해까지 서쪽으로 45마일까지 뻗은 수역으로 1:5만 비무장지대 특수지도 L754에 나타난다. 한강 하구는 비무장지대이다. 남방 경계선은 임진강 합류점까지 뻗친 교동섬의 서북방 기슭이다. 북방 경계선은 강입구 북방 기슭과 한강과 임진강 합류점의 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쪽 기습이다.

고밀도 훈련지역(HDTA). 한미 헬기의 강도 높은 저공비행훈련을 위해 지리적으로 지정한 지역.

ㄱ. 고밀도 훈련지역 #1. 동부경계선: 의정부 북방(CG261807)으로부터 북쪽으로 (RK) P-518 S/T선을 따라 G-219 근처(CG243977)와 임진강 횡단다리(CH246087)까지의 선. 북부경계선: CH241068 - CH180027 - CH156012 - CG088967을 남서쪽으로 따른 선. 서부경계선: CG088928 - CG088894 - CG088828 - CG088807을 남쪽으로 따른 선. 남부경계선: CG133807 - CG218807 - CG261807을 동쪽으로 따른 선.

ㄴ. 고밀도 훈련지역 #2. 의정부 북방(CG261807)으로부터 CG372821 - CG428848 - CG61865를 북동쪽으로 따른 선. 동부경계선: CH566107에서 391 간선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CH568107까지. 북부경계선: CH473107 - CH369107 - CH298107 - CH256087을 서쪽으로 따른 선. 서부경계선: (RK) P-518 S/T 경계를 따라 CG243977 - CG261807까지 남쪽으로 따른 선.

ㄷ. 고밀도 훈련지역 #3. 남부경계선: CH256087로부터 CH298107 - CH369107 - CH473107을 동쪽으로 따른 선. 동부경계선: 391 간선도로를 따라 CH623287까지 북쪽으로 따른 선. 북부경계선: CH546287 - CH482287 - CH448287 - CH359287을 서쪽으로 따른 선. 서부경계선: CH349255 - CH320172 - CH298107을 남쪽으로 따른 선.

한국 육군항공 기지(다수 항공기 운용지역)

ㄱ. (RK) P-518 한국전술지대에서 운영중인 한국 육군항공 기지는 다음과 같으며, 비행안전 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 기지명 | 중심좌표 | 관제탑 / 주파수 | 공역범위 | 비 고 |
|------------|----------|-------------|---------------|----------|
| G-110(파주) | CG054820 | 파주 / 38.00 | 3NM / 2,000ft | |
| G-217(포천) | CG395921 | 포천 / 36.10 | 3NM / 2,000ft | UAV 운용기지 |
| G-218(신산리) | CG215962 | 신산 / 38.00 | 3NM / 2,000ft | |
| G-219(봉암리) | CG250976 | 봉암리 / 36.70 | 3NM / 2,000ft | |
| G-222(가남리) | CG231893 | 가남 / 36.70 | 3NM / 2,000ft | UAV 운용기지 |
| G-228(백의리) | CH369109 | 백의리 / 40.55 | 3NM / 2,000ft | |
| G-231(이동) | CH566105 | 이동 / 38.00 | 3NM / 2,000ft | |
| G-312(사창리) | CH703152 | 사창리 / 74.40 | 3NM / 2,000ft | |
| G-313(화천) | CH848199 | 화천 / 56.35 | 3NM / 2,000ft | |
| G-404(양구) | DH112160 | 양구 / 36.70 | 3NM / 2,000ft | UAV 운용기지 |
| G-414(원통) | DH299179 | 원통 / 36.60 | 3NM / 2,000ft | |

ㄴ. 위의 언급된 한국 육군항공 기지는 다수항공기가 운항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관제탑과 교신을 실시한다.

군사분계선(MDL). 유엔군 관할지역과 북한군 관할지역을 구분하는 한반도를 횡단한 선이다. 군사분계선은 L754계열 1:5만 비무장지대 특수비행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3121, III, 3122 I, II, III, 3222 I, IV, 3322 I, IV, 3323 II) (참고지도는 한국 지도발행소에서 발간함)

중앙항공통제소(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 자동화 방공체제의 중추기구로서 한국의 방공에 관한 모든 업무수행의 주관부서로서, 전구 항공통제본부(TACC)의 통제하에 공중감시, 항적식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전술조치, 요격관제 임무 등을 수행한다.

비행금지구역. 군사분계선과 비행금지선 사이의 지역으로, 비행금지구역은 항공기 진입을 허용하는 회랑지대도 포함된다. 비행인가와 비행추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6개의 소구역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나눈다. 다음과 같이 구역 경계를 정한다.(세부내용은 부록 라 참조)

- ㄱ. I 구역. 2번 회랑으로부터 BG943832에서 BG954765까지의 남북선까지.
- ㄴ. II구역. I 구역의 서부경계선으로부터 32번 회랑까지.
- ㄷ. III구역. 32번 회랑으로부터 동쪽으로 CH408397에서 CH408337에 걸친 남북선까지.
- ㄹ. IV구역. III구역 동부경계선으로부터 동쪽으로 56회랑지대까지.
- ㅁ. V구역. 56번 회랑지대로부터 동쪽으로 DH038407에서 DH038267까지의 남북선까지.
- ㅂ. VI구역. V구역의 동부경계선으로부터 동쪽으로 92번 회랑까지.

비행금지선(NFL). 항공기와 조종사가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여하한 항공기도 비행할 수 없으며 서에서 동으로 한반도를 횡단한 지형선이다. 이 지형선은 특수계열 L754 비무장지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라에 참조)

(RK) P-73 인근지역 비행지침. 규격과 범위, 제반 통제절차는 한국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RK) P-73 인근지역 비행지침(국방부 발행, 2002. 1. 1), 항공안전본부 발행 항공정보 간행물, 미국방성 비행정보간행물에 수록되어 있다.

전술지대 면제지역. 전술지대 면제지역은 지도상에 CG308785 - CH330027 - CH288027 - CG208857 - CG249756를 처음의 CG308785까지 연결하는 선에 의해 형성된다.

(RK)P-518 동부 전술지대(P-518 EAST). DE449762-OH811465-DH606355-동부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시작지점을 연결한 지역으로 지표로부터 고도 무한대까지이다. (RK)P-518 전술지대 비행절차를 따르며 MCRC에서 통제한다.

(RK)P-518 서부 전술지대(P-518 WEST). XC010064-XC624074-비행금지선을 따라 동쪽으로 -BG452782-BG500767-BG500708-YB444516-시작지점까지 연결한 지역으로 고도 무한대까지이다. (RK)P-518 전술지대 비행절차를 따르며 MCRC에서 통제한다. 인천 국제공항 공역 인접시에는 서울 접근관제소와 협조하여야 한다.